

연구결과 요약집

2007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과 재정정책 등 경제 관련 정책들을 연구·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2년 9월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개원 이후 저희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고 폭 넓은 연구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확립과 세무행정의 발전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바, 보다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정책의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국가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조세 및 재정분야에 대한 본원의 연구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연구결과를 한 데 모은 이 연구결과 요약집이 아무쪼록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황 성 현

일 러 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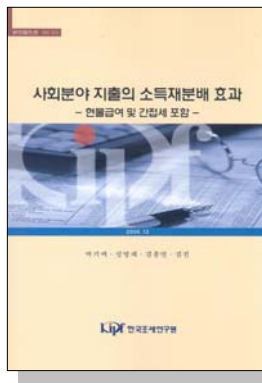
1. 본 책자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06년 이후 발행한 보고서의 내용 요약 및 주요 목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6년 이전에 발행한 보고서는 '1993~2006 발간도서목록'에 수록하였습니다.
2. 지면 관계상 용역보고서, 번역자료, 일부 기타보고서 등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3.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전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f.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4.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연구보고서	9
06-01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	11
06-02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16
06-03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31
06-04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38
06-05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연구	46
06-06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49
06-07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56
06-08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64
06-09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71
06-10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77
06-11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81
06-12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88
06-13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94
06-14 재정의 유지 가능성과 세입·세출의 인과관계 검토	99
06-15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103
06-16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108
06-1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115
06-18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122
06-19 평생세부담 분석을 통한 조세의 재분배 기능 고찰	125

● 기타보고서	129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131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134
● 세법연구	143
06-01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145
06-02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146
06-03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147
06-04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148
06-05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150
06-06 주요국의 보유과세체계 현황 및 비교	151
06-07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52
06-08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154
07-01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채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155
07-0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157
07-0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159
07-04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160
07-05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162
07-06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연구	163
07-07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165
07-08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167
07-09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168
● 『재정포럼』	169
● 1993~2007 발간도서목록	195

연구보고서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

◆ 박기백 · 성명재 · 김종면 · 김 진

◆ 2006. 12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지출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분배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향후 제안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복지관련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분석의 대상은 지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재원의 조달 방식까지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조세와 지출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 자료는 1995~2005년도 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자료를 가구별로 재정리하여 연간자료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계절성과 선택편의를 교정하였고,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의 소득은 역소비함수를 추정하여 구했다. 그리고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세부담은 가계조사자료가 담고 있는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impute)하였다. 실질적인 소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소득세 및 이전지출은 해당 금액만큼 가·차감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소비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현물로 지급되는 정부지출은 개인별로 배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를 보면 지난 10년간 지니계수는 0.243(1995년)에서 0.293(2005년)으로 0.05p, 증가율은 2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997~1998년의 경제위기 시점을 제외하면 추세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득세, 재산세, 각종 연금각출금과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0년대 중반에 약 4~5%p 수준이었다가 경제위기 기간 즈음에 2.6~3.1%p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그 효과가 조금 회복되어 2000년대에는 4%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전소득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 즉 시장소득단계에서 가처분소득단계에 이르는 동안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6.6% 정도 개선하고 있다.

소비세의 분석 대상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이다. 담배소비세와 주세의 역진성이 높은 반면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거의 비례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효과가 거의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소비세를 포함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6.1%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비세로 인하여 약 0.5% 정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6분위 정도가 가장 크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이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정액(lump-sum)에 가까운 형태로 배분되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그 개선도가 2.75%이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약 2.6%(지니계수 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의 현물 혜택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약 1.7% 수준이다. 보육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약 0.17%로 기초생활보장 현물 급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주택은 지원 규모가 작고,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민간소득)에서 조세 및 보험료를 차감한 소득을 계산하고,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이나 연금소득 및 각종 현물 혜택을 추가하여 소득분위별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소득 5분위까지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며, 소득 6분위부터는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의 경우 민간소득은 1,100만원 수준이고,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차감한 소득은 약 1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의료 등 각종 혜택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득은 약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으로 약 300만원 정도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득 10분위 가구의 민간소득은 약 8,700만원이지만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가처분소득이 7,400만원으로 낮아지고, 연금·교육 등의 혜택을 추가하여도 실질소득을 약 8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의 개입으로 소득이 700만원 정도 낮아지고 있다.

모의실험을 통해 증세 및 사회분야 지출을 중심으로 세입·세출과 관련된 재분배 효과를 1조원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를 보면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부담액이 6%를 전후하여 증가하였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세 부담 증가율이 평균 6%를 상회하는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세 부담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현재의 0.28313에서 0.28244 및 0.28295로 0.00069p 및 0.00018p 하락하였다.

면세 범위의 축소를 통해 부가가치세 증세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계층별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변화효과가 달라지지만 세율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계산한 결과를 보면 지니계수가 0.28215에서 0.28218로 0.00003p 미미하게 상승하였다.

담배세의 경우도 증세를 하면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절대수준만 거의 비슷하게 증가할 뿐 상대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담배세가 역진적이어서 지니계수는 0.28177에서 0.28192로 0.00015p 상승하였다.

지출의 경우를 보면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은 0.28402에서 0.00028p 감소한 0.28374, 기초생활은 0.00211p 감소한 0.28191, 보육은 0.00136p 감소한 0.28266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기초생활 및 보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모든 세입과 지출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조세 및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세입의 효과가 아니다. 또한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국방이나 일반행정, 지방정부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둘째, 많은 가정이 포함되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혜택의 경우 성별, 연령별 의료비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의료서비스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이러한 점은 고려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의 초점은 소득재분배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본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하나의 요소이지 전부는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 영국 통계청에서 사회분야 지출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영국 정부의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회분야 지출 및 소비세를 포함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정책 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목 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및 자료

1. 기존 연구
2. 분석 방법
3. 자료 설명

III. 조세 및 이전소득

1. 소득분포
2. 소득재분배 효과

IV. 사회분야 지출(현물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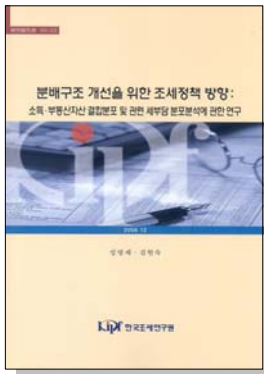
1. 공적연금
2. 건강보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교육지출
5. 보육지출
6. 주택 관련 지원
7. 현물급여의 재분배 효과

V. 정책효과 분석 및 모의실험

1. 개 요
2. 소득종류별 소득분포 종합
3. 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4. 사회분야 지출 확대의 재분배 효과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 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 성명재 · 김현숙

◆ 2006. 12

1. 연구목적

분배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소득에 국한되어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분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득-자산의 결합분포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2003년)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2003년 과세분)를 결합하여 소득-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를 고찰한다. 또한 잠재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원분포를 추정하여 부동산 과세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자산분배 구조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지 못하고 분석자료도 비교적 조사오차가 큰 서베이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는 건물분 재산세 및 토지분 통합토지세 과세원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만큼 분석자료의 신뢰도와 대표성이 상당히 높다.

일반적으로 소득-자산분배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계층별 자산분배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자산분배 구조는 소득분배 구조보다 편중도가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고소득층일수록 자산의 집중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편중도를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재산과세(부동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양도소득세의 잠재적 세원, 즉 미실현자본이득의 계층별 분포 및 양도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소득자료와 부동산자산자료의 결합 부분과, 결합자료를 토대로 한 분배구조 분석 부분,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추정 부분, 주택 관련 자본이득 분포 및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원 분석 부분 등으로 구분된다.

2. 연구방법

가. 소득 - 부동산 자산의 결합

소득 -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구성을 위해 소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2003년)를 사용하였으며, 부동산자산 자료는 2003년도 건물분 재산세 과세원시자료와 동년도 토지분 종합토지세 과세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건물분 재산세 과세자료는 편의상 주택, 상가, 기타건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택은 다시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농어가, 기타 주택의 일곱 가지로 세분류하였다. 토지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는 용도에 따라 종합과세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 종합과세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주거용 부속토지), 나대지, 기타 토지의 세 가지, 분리과세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주거용 부속토지)와 기타 토지의 두 가지로 세분류하였다.

(자료결합방법) 소득자료와 부동산 과세자료를 연결하여 결합시킴에 있어서는 자료결합을 위한 과세자료의 정리, 주택, 상가, 기타 건물의 건물분 과세자료와 토지자료의 인별 결합, 가구정보에 기초한 가구별 결합, 소득자료와의 결합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작업한다.

(과세자료의 정리) 건물분 과세자료의 경우 과세정보 안에 소유자의 식별번호와 가구주 식별번호를 담고 있으며, 토지분 과세자료는 소유자의 개인 식

별번호를 담고 있어, 소유자 인별로 건물 및 토지분 과세자료를 연결시키고, 건물분 과세자료에 나타난 가구주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별로 연결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자료와의 결합)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주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토대로 1차로 자료를 결합하고, 복수로 연결된 자료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등의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일대일 대응관계를 확보한다(주거용 부속토지는 주택자료에 직접 결합, 주택자산의 결합은 노영훈·김현숙(2005)의 방법을 차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상가와 기타 건물을 소유한 가구자료의 결합) 가계조사자료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중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생년월일과 성별, 재산세액과 과세표준액 순위를 기준으로 결합한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내대지와 별도합산 토지를 소유한 가구자료의 결합)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중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생년월일과 성별, 종합토지세 납부액과 과세표준액 순위를 기준으로 결합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종합과세분 중 기타 토지와 분리과세분 중 기타 토지의 경우에는 정보 부족으로 자료결합에 실패하였다. 자료결합에 이르지 못한 토지자산은 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전체의 12.7%를 차지한다.

(소득-자산 결합분포의 분석방법) 소득-자산 결합자료를 토대로 각 자산 종류별 분위와 총소득 분위 등으로 구분하여 계층별 자산분포 구조를 살펴보고, 추정지대(imputed rent) 합산을 통한 포괄소득 분포의 추정과 지니계수 등을 이용한 분배구조의 불평등도, 포괄소득의 변동성 등을 추정한다.

나.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추정과 주택 양도소득 세원분포의 추정

기존의 연구에서는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소비 관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소비함수 또는 소득함수 추정법을 이용하였는데, 가정을 보

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식료품 등에 대한 지출체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소비함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소보고율을 추정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에 나타난 정보, 즉 취득일자를 토대로 지역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자본이득을 추정하여 주택의 자본이득 분포를 분석하고, 양도소득세의 잠재적 세원을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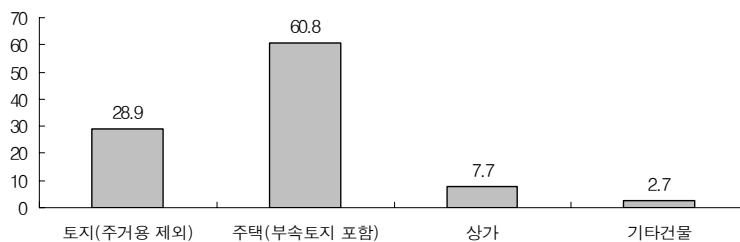
3. 주요 연구내용

가. 소득 - 부동산자산 분포구조

(부동산자산의 종류별 구성) 부동산자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가격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자료에 나타난 과세표준의 시가반영률이 자산 종류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과세표준만 고려할 경우 토지(주거용 부속토지 제외)와 주택(주거용 부속토지 포함)의 과세표준 구성비는 각각 28.9%와 60.8%로 부동산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시가반영률을 다른 조합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확정적인 추정치가 아니므로 해석상 많은 주의가 요청된다.

[그림 1] 부동산 자산 종류별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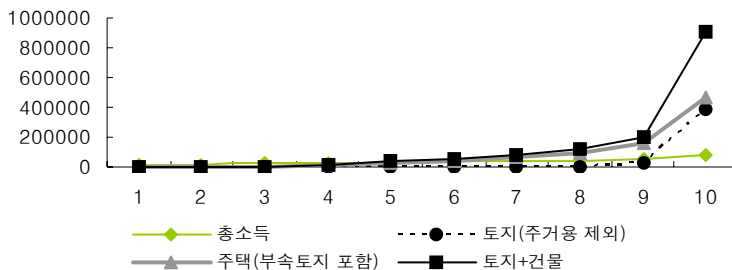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주택 및 토지 분포) 주택과 토지자산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각각 최대 70%와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택의 경우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를 살펴봄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소득분포와 주택 또는 토지의 순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가구가 반드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소유편중도가 가장 높은 부동산자산 중 하나이다. 그러나 농가주택의 소유자를 고소득층 또는 고자산가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자산의 소유집중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유형의 부동산 고자산가가 반드시 전체적으로도 고자산가이거나 또는 고소득층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연령별 주택 및 토지 분포) 부동산자산은 대부분 가구주 연령이 50대 초반인 가구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대 초반 가구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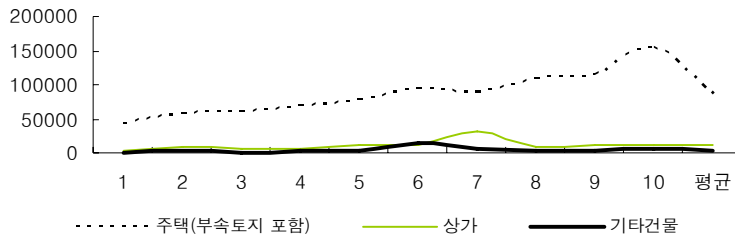
[그림 2] 총소득 및 부동산 자산 종류별 과세표준 분포
(각 자산분위 기준)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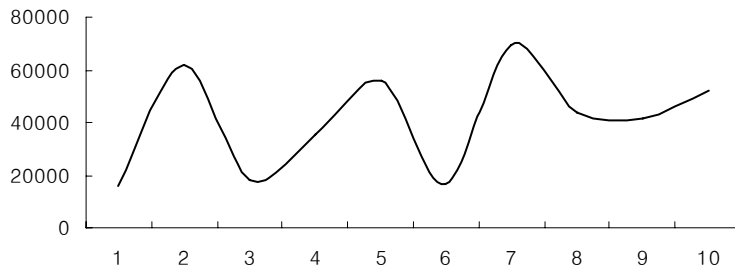
[그림 3] 부동산자산의 소득계층별 분포(건물)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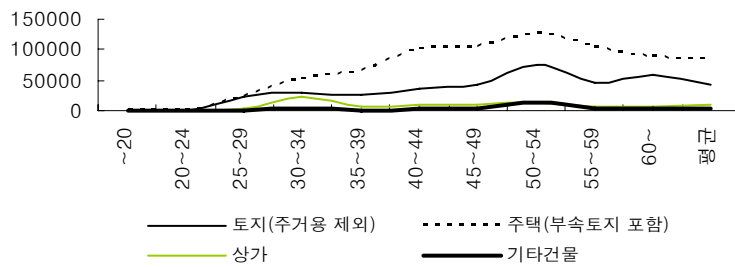
[그림 4] 소득계층별 토지자산(주거용 부속토지 제외)의 분포

(단위: 천원)



[그림 5] 토지와 건물자산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단위: 천원)



부동산자산의 자산계층별 분포가 편중되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결합분포를 구성하여 소득계층별 분포도를 추정해보면 소유편중도가 크게 완화된다. 자산별 소유분포와 소득분포의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자산의 편중도가 높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고소득층에만 부동산자산의 소유가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속, 증여, 은퇴 및 기타의 부동산 취득 동기가 소득획득 패턴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표 1〉 총소득 및 부동산 종류별 과세표준 분포(2003년, 총소득 분위 기준)
(단위: 만원)

		분포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총소득			11,614	17,935	22,338	26,179	30,139	34,049	38,772	44,850	52,740	77,114	35,571	
부 동 산 자 산	토 지	종합합산 - 기준면적 이내 (주거용 부속토지)	24,384	35,205	28,358	31,972	33,309	37,571	36,779	49,250	46,927	59,739	38,346	
		종합합산 - 나머지	769	5,452	1,682	3,969	7,834	781	772	1,978	4,328	1,238	2,880	
		종합합산 - 기타 토지	2,254	5,656	2,168	2,184	4,637	1,549	3,074	4,390	7,600	5,805	3,931	
		별도합산	7,568	31,815	6,430	19,483	35,227	8,410	56,187	20,578	16,972	28,442	23,111	
		분리과세 - 기준면적 초과 (주거용 부속토지)	0	0	20	0	121	0	0	0	0	0	14	
		분리과세 - 기타 토지	5,435	19,072	8,017	9,886	7,824	6,038	9,711	16,676	12,324	16,556	11,150	
		토지 계 (주거용 부속토지 제외)	16,026	61,996	18,297	35,522	55,522	16,778	69,745	43,621	41,224	52,041	41,071	
	건 물	주 택	단독	1,671	2,078	1,480	1,489	1,357	1,426	1,321	2,103	2,078	2,142	1,714
			다가구	838	893	1,050	1,326	1,626	786	929	1,695	1,475	1,434	1,205
			아파트	14,064	17,517	25,262	31,679	39,984	50,998	47,777	53,130	63,675	86,757	43,084
			연립	58	127	193	196	609	1,295	1,738	430	229	1,514	639
			다세대	308	1,388	3,255	882	907	1,135	1,208	575	818	1,141	1,161
			농어가	221	174	79	63	97	26	68	58	103	173	106
			기타 주택	57	22	0	0	12	0	0	25	53	6	17
			계(부속토지 제외)	17,217	22,199	31,321	35,636	44,591	55,666	53,041	58,016	68,431	93,168	47,928
			계(부속토지 포함)	41,602	57,404	59,699	67,608	78,022	93,237	89,819	107,266	115,358	152,906	86,288
		상가	2,765	7,365	6,757	4,736	11,670	10,197	31,853	8,960	12,159	12,540	10,901	
		기타건물	572	3,779	892	1,803	2,482	13,308	4,599	3,667	2,283	4,481	3,786	

주: 총소득은 가계조사자료, 부동산자료는 과세자료 기준

부동산자산은 종류에 따라 분포구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토지자산은 토지분위 중 상위 30% 정도, 주택은 주택분위 기준으로 상위 70%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다. 토지의 지니계수는 종류별로 0.95 이상, 주택자산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0.7~0.8 정도로 추정된다. 토지와 주택 자산을 모두 합산할 경우 지니계수는 0.765이다.

저량 개념의 부동산자산을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유량화하여 포괄소득으로 전환해본 결과, 포괄소득의 소득순위를 고정시킬 경우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순위변동을 허용할 경우 지니계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분배구조를 고려한 총체적인 소득분배 구조는 자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주택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원분포

부동산자산 전체를 통합하여 가구의 소득분배 구조를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구의 부동산자산 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시가 파악이 가능한 주택자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과 주택자산의 결합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 중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진위를 판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조사자료상의 자영업자 보고소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Pissarides and Weber(1989),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의 자영업자 소득추정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과소보고율을 추정하여 주택자산으로부터 소득과 결합시 활용하였다. Pissarides and Weber(1989)의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소득보고율이 상관계수 값에 따라 최고 85%에서 최저 48.5%로 추정되었다.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고려하여 경상소득에 더하여 포괄소득을 구성하고 포괄소득에 따른 불평등도를 추정하여 소득만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귀속임대소득은 주거서비스 향유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주택의 지역별 전세/매매가격 비율과 월세이율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으로부터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표 2〉 가구유형별 추정소득의 지니계수

가구유형	$\rho = 0$	$\rho = \frac{1}{2}$	$\rho = 1$
자영업자가구 사업소득 보고율	85%	71.4%	48.5%
전체가구	0.314	0.316	0.345
근로자가구	0.301	0.301	0.301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첫째 방법은 주택구입일자로부터 200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액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인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간 이자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이 방법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부(wealth)의 효과에 기초하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구의 예산제약의 증가분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방법은 2002~2003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액을 모두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동 기간에 전세가격이나 월세이율은 증가하지 않은 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소득을 모두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였다.

주택으로부터의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고려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하면, 가구주 직업유형별로 볼 때 근로자가구 내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주택으로부터의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의 불평등도

가구유형	지니계수
전체가구	0.719
근로자가구	0.730
무직가구	0.699
자영업자가구	0.704

자본이득을 4% 이자소득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절대치가 작아져 불평등도가 <표 3>보다는 개선되었다.

<표 4> 주택으로부터의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4% 이자소득)의 불평등도

가구유형	지니계수
전체가구	0.702
근로자가구	0.713
무직가구	0.680
자영업자가구	0.695

소득과 귀속임대소득을 고려할 경우의 지니계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상관계수 값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 포괄적 소득(소득+귀속임대소득)의 불평등도

가구유형	$\rho = 0$	$\rho = \frac{1}{2}$	$\rho = 1$
전체가구	0.319	0.320	0.341
근로자가구	0.311	0.311	0.311
무직가구	0.392	0.390	0.390
자영업자가구	0.279	0.273	0.265

소득과 주택자산으로부터 귀속임대소득,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한 경우의 지니계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소득만을 고려한 경우나 소득과 귀속임대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상관계수 값이 매우 커지면 그 관계는 역전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자본이득을 이자율 4%에 따른 이자소득만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소득+귀속임대소득 고려시의 소득분배구조와 비교해볼 때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는 미미하다.

소득, 귀속임대소득, 자본이득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는 소득세, 주택관련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계산하여 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포괄적 소득(소득 + 귀속임대소득 + 자본이득)의 불평등도

가구유형	$\rho = 0$ (4%)	$\rho = \frac{1}{2}$ (4%)	$\rho = 1$ (4%)
전체가구	0.362 (0.320)	0.367 (0.321)	0.392 (0.342)
근로자가구	0.342 (0.311)	0.342 (0.311)	0.342 (0.311)
무직가구	0.429 (0.392)	0.436 (0.390)	0.459 (0.389)
자영업자가구	0.347 (0.280)	0.355 (0.274)	0.377 (0.266)

주 : 1. 앵겔곡선추정법에 따른 사업소득 추정에 근거

2. 괄호 안의 값은 자본이득으로부터 연간 4%의 이자율에 따라 이자소득만을 자본이득으로 포함시킨 경우임.

결론적으로 가구의 소득 외에 주택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고려한 경우 가구의 소득분배는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커지며 가구의 세부담 중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비해 주택자산 보유세 부담은 매우 낮아(2003년 기준)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7〉 근로자가구의 세전 및 세후지니 비교 I

포괄소득의 정의	세전소득 지니	포괄 가처분소득의 정의	세후소득 지니
소득	0.301	가처분소득 = 소득 - 세법상의 소득세	0.286
소득+귀속임대소득	0.311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소득 - 재산세 - 종토세	0.300
소득 + 양도소득	0.316	가처분소득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0.303
소득 + 귀속임대소득 + 양도소득	0.342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소득 + 양도소득 - 재산세 - 종토세 - 양도소득세	0.334

〈표 8〉 근로자가구의 세전 및 세후지니 비교 II

포괄소득의 정의	세전소득 지니	포괄 가처분소득의 정의	세후소득 지니
소득	0.301	가처분소득 = 소득 - 세법상의 소득세	0.286
소득 + 귀속임대소득	0.311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소득 - 재산세 - 종토세	0.300
소득 + 4% 이자 양도소득	0.299	가처분소득 + 4% 이자 양도소득-양도소득세의 4%	0.285
소득 + 귀속임대소득 + 4% 이자 양도소득	0.311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소득 + 4% 이자양도소득 - 재산세-종토세 - 양도소득세의 4%	0.301

4. 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를 고려할 때 소득 외에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통합하여 고려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05년 이후 급증하였다. 가구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정보의 제공이 절실하다.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부담 간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부동산 보유관련 과세자료 외에 거래관련 자료의 확보도 시급하다.

소득에 기초한 소득불평등도 수준보다 소득과 주택자산을 함께 고려한 경우의 소득불평등도는 일반적으로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수준은 자영업자 소득추정 방식과 상관계수, 주택자산 가액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가 등 포괄적 소득의 구축방식에 따라 변화하므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003년 한 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5~2006년 부동산 보유과세자료가 있어야 보유세 체계 변화 이후 보유세 부담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효세율만을 비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소득세나 부동산 보유세 부담보다 높다.

◆ 목 차

《제 I 편》 소득·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I. 서 론

II. 소득자료 및 부동산 과세자료의 특성과 결합방법

1. 개 요
2. 가계조사자료(2003년)
3. 부동산 과세자료
4. 자료의 결합방법

III. 소득·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특성

1. 개별분포: 소득분포
2. 개별분포: 부동산자산 분포

3. 소득과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4. 소득·자산계층 구성 분포
5. 집중도 분석

IV. 포괄적 소득분포의 특성

1. 포괄소득의 산출: 전환율(또는 이자율)에 대한 가정
2. 포괄소득의 분포
3. 포괄소득 지니계수
4. 포괄소득과 총소득 간의 상관관계(소득변동성)

V. 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분포

1. 소득세
2. 재산세

VI. 맺음말

《제II편》 소득·주택자산 결합분포 및 주택관련 세부담 분석

I. 서 론

II. 소득과 주택자산의 결합

1. 가구의 경제적 처지를 측정하는 수단
2. 주택자산으로부터의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
3. 자료연계 방법론

III.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추계 및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1.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2. 가구의 소득에 따른 불평등도 측정

IV. 주택자산 및 포괄적 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분석

1. 개 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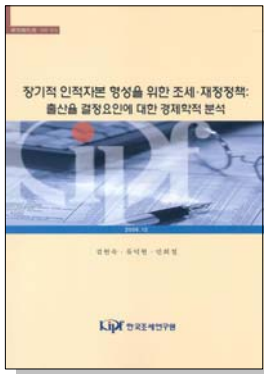
2. 주택으로부터의 자본이득
3. 자본이득과 귀속임대소득
4. 포괄소득 분포
5. 포괄적 소득의 분위별 분석
6. 2003년 이후 주택자산가격의 변화

V. 주택관련 세부담의 비교

1. 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체계
2.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보유세 부담비교
3. 가계조사자료 표본을 이용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4. 근로자가구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재분배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 2006. 12

본 연구는 장기적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1차연도 과제로 출산율을 결정하는 경제학적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남성의 소득, 여성의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여성임금의 증가, 여성의 혼인연령의 변화에 맞추어진다. 이미 가치관이나 사회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은 것과 달리 자료의 부재문제나 경제학적 관심도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수행하지 못했던,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분석의제들을 설정하고 자료를 사용한 엄밀한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기존의 출산율에 대한 Becker의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count 모형, survival analysis,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구조적 동학모형 등 선행 실증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제IV장은 미시분석으로 자녀 수에 대한 count 모형과 결혼 및 출산간격에 대한 survival analysis로 구성되어 있다. 제V장은 거시분석으로 거시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출산율과 남성 및 여

성의 소득, 임금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제VI장에서는 제IV장과 제V장의 분석을 연계하여 각 설명변수들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 마지막 VII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핵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2차연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은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2.1명) 이하에 머물렀고, 1985년 후 약 10여 년간은 1.6~1.7명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이상변동을 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하였고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이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논의되는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발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출산율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영아사망률 급감, 少자녀 선호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현격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은 출산율을 더욱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하락해 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2.7명에서 2002년 1.6명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과 지연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회적 구조적 원인과 가정에서 여성의 성 역할(gender role)의 변화에 기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교육, 여성의 노동참여로 인한 소득의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의 변화, 그리고 가족형성패턴을 변화시키는 혼인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기타요인들이

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삼는 것으로는 가족과 성 역할(family and gender role)에 대한 여성의 태도 변화이다.

제Ⅲ장은 출산을 결정을 다루는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을 소개 및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연구의 근간은 Heckman & Willis(1975)의 생애효용모형과 Becker(1960, 1973, 1976)의 Quantity-Quality 모형, Easterlin(1968)의 세대 간 상대소득에 따른 출산을 결정이론으로 대표될 수 있다.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은 Becker(1960)와 Becker(1976)의 발전과정을 거쳐 출산을 결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근간이 된다. Becker(1960)는 Quantity-Quality 모형의 기본적인 틀을 처음 제시한 논문으로 자녀의 질적 수준의 초기 부존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자녀 수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탄력성보다 크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수가 감소한다는 명제를 도출한다. 반면 Becker(1973)는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Becker(1976)는 초기 부존자원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의 소득탄력성의 크기에 대한 결론이 사전적인 가정 없이 도출되도록 수정하였다. 출산을 결정이론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Easterlin(1968)은 Becker의 정태적인 아이디어와는 달리 가구나 개인의 선호의 시간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세대 간 소득의 차이나 세대별 인구 수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출산을 결정요인을 찾고 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약해져 임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높아져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아버지 세대의 소득에 대한 자신 세대의 잠재적 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출산도 많아진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노동시장의 진입도 용이하고 소득도 높아져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약 20년 후의 자녀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소득도 낮아져 출산율이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출산결정에 대한 실증 문헌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대한 것이 주된 연구영역이다. 첫째, 완결출산

(completed fertility)결정에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출산의 간격 및 출산시기 결정에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정책(counterfactual policy)이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등이다.

제IV장에서는 기존의 출산율에 대한 Becker의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출산력 자료와 여러 사회경제적 자료들을 사용하여 미시적인 수준에서 출산율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출산과 결혼간격에 대한 survival analysis를 통해서는 2003년 출산력 자료와 1979년 이후 매월노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수들이 첫 출산간격과 두 번째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간격에 관한 종전 연구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여성임금 및 남성소득의 효과에 대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여성임금의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 모두를 지연시키며 동시에 출산중단의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남성의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으로 첫 자녀의 성별이 두 번째 자녀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출산지연보다는 출산중단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임금과 남성소득 외에 첫 자녀의 여아 여부, 남편과 부인의 형제·자매 수, 거주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 역시 출산간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수를 결정하는 count 모형을 통해서는 먼저, 가구소득이 출산자녀 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40세 혹은 45세 이상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추정한 완결출산을 분석에서 나타난 것으로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가 자녀 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에 따를 경우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존자원의 수준이 가구소득에 크게 연동될수록 소득의 증가는 자녀 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계층 간 이동성이 작은 경우 가구소득이 높으면 이

미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존자원이 큰 것이므로 자녀의 질적 수준보다는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데 가구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임금과 학력수준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 수 결정모형에서는 항상소득가설에 입각하여 계산한 부인의 임금 수준을 구하기가 어려워 여성의 임금변수에 대한 대리변수로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을 이용하였다.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은 40세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자녀 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보다 출산하는 자녀가 더 적다는 것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허들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학력이 자녀출산 여부보다는 자녀 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40세 이상의 가임기가 거의 끝난 기혼여성그룹에서는 경제활동참여 여부가 자녀 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기혼여성이 직장을 가진 경우 출산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40대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고 현재 출산과정에 있으므로 취업자체가 출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임기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속적인 취업으로 인해 자녀출산에 장애가 생긴다면 결국 가임기 전체에 걸쳐 자녀를 출산하는 빈도는 낮게 된다. 그 외 남아선호사상 혹은 첫째 자녀가 딸인 경우와 기타 가치관 변수가 자녀 수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제V장은 거시분석으로 거시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출산율과 남성 및 여성의 소득, 임금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 영아사망률 급감, 少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산에 대한 결정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 등은 ‘집단적인 성격(collective property)’을 띠고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출산율과 여성노동시장 참여 양태, 즉 여성노동공급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집계변수를 사용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다. 우리는 출산을 결정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 중 신가계경제학의 이론적 가설을 실증분석의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임금의 상승효과는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소득은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가 많은 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소득가설의 검증을 통해 우리는 세대 간 상대소득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가 젊은 계층에 더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VI장에서는 제IV장의 미시적 분석과 제V장의 거시적 분석을 연계하여 각 설명변수들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논점들로는 우선,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출산율의 양적인 감소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과 같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학력, 시장임금 및 경제활동참여율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 양(+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배려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과 분석을 제공한다. 즉, 여성노동시장참여율 제고가 출산율 감소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에 기초하여 정부의 정책적 수단은 결국 중(장)기적 인적자본 충원의 보고인 여성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직장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발 가능한 정책수단과 정책수단별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2차연도 과제로 남긴다.

마지막 VII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핵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2차연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 목 차

I. 서 론

II. 출산율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출산율의 현황 및 변천과정
2.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현황 및 하락요인에 관한 연구

III. 출산율 결정에 대한 선행연구

1. 출산율 결정의 이론적 모형
2. 실증적 연구

IV.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미시적 분석

1. 결혼과 출산간격에 대한 Survival Analysis
2. 자녀수 결정모형 : Count 모형
3. 합계출산율과 완결출산율

V.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거시적 실증분석

1. 문제제기
2. 출산율 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가설 및 자료에 대한 설명
3. 실증분석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VI. 미시적·거시적 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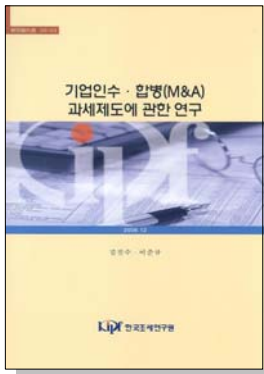
1.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의 해석과 연계
2. 정책적 시사점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 김진수 · 이준규
- ◆ 2006. 12

I. 주요 내용

가. 배경

우리나라의 M&A 역사는 일천하여,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 합리화정책 등에 따라 주로 재벌의 계열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합병이 대부분이었으며, 재벌 계열회사 간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인수·합병(M&A)은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1998년 말 세법 개정에서 기업의 합병에 관한 과세체계가 대폭 정비되었다. 그동안 합병과세제도는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왔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세법에도 과세특례합병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1998년 말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합병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면이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합병세제는 비과세합병과 과세합

병을 명확히 구분한 논리적으로 일관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병 관련 과세제도는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실질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인수에 대한 과세제도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1998년 말 세법개정에서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한시적 감면방식에서 과세이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업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두게 되었으나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업인수에 대해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세특례를 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기업인수의 경우에도 만일 인수의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교부하고, 기업인수로 인해 회사구조나 소유관계가 재조정될 뿐 사업이 계속된다면 기업합병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는 거의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 우호적 기업인수와 달리 경영권 탈취를 위한 공격과정과 이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과세제도의 내용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주요국의 기업인수·합병 과세제도

미국과 일본의 기업합병 과세제도 및 기업인수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 모두 비과세 기업합병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합병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재조직(reorganization)의 하나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업

재조직이 법인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지분을 주식소유의 계속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경제적인 지분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없는 통상의 사업조정이므로 이와 같은 재조정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세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 세법개정에서 조직 재편성에 의한 이전자산 등에 대하여 그 양도손익 계상을 연기하는 세제를 마련하였다. 합병을 비롯하여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 등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합병, 적격 분할, 적격현물출자, 적격사후설립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모두 비과세 기업인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합병뿐 아니라 기업인수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하고 있다. 미국 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제368조에서는 기업의 재조직(reorganization)을 A형부터 G형까지 7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B형(주식인수)과 C형(자산인수)이 기업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세법개정에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적격주식교환과 적격주식이전 등의 과세특례제도를 정립하였다.

셋째, 미국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5차 기업인수 붐(1984~1990년)을 맞이하여 적대적 기업인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해 세법상 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빈번히 발생하는 적대적 기업인수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의회를 중심으로 팽배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재정적자감소법(Deficit Reduction Act of 1984)에 의해 고액의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은 그린메일지급금에 대한 세법규정을 신설하였고 고액의 임원퇴직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1987년 예산조정법(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7)은 그린 메일지급금의 수령에 대한 세법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0년 예산조정법(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은 LBO에 대한 세법규정을 신설하였다.

II. 정책시사점

가. 현행 기업합병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외국의 제도를 비교해 볼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업합병 과세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특례합병의 요건을 경제적 실질에 적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행 법인세법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사업상의 목적(business purpose)으로 합병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식교환 비율을 현행 세법에서는 95%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비율을 50% 정도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95%의 기준은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사업의 계속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에서처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정하지 말고 합병등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예: 2년 정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과세특례합병제도처럼 교부주식의 시가를 합병대가로 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함으로써 가급적 과세하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합병 당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게 하는 비과세합병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합병 당시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 청산소득, 의제배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합병법인은 자산의 장부가액(부채는 차감)을 합병대가로 하여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병법인은 승계받는 자산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합병에 대하여는 모든 세무조정사항 및 조세혜택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비과세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합병 당시의 시가로 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합병법인의 주식도 시가(액면가액은 자본금의 증가,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합병의 결과 발생하는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의 가액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게 된다. 합병차익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게 측정된다는 문제점과는 별도로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합병법인의 장부계상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이인데,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을 교환거래로 본다면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장부에 계상하고 있던 가액은 자산을 양수하는 합병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합병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말고 당해 이익을 승계받은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때 익금에 산입(양도차익을 구성)하여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서와 같이 합병 전 이월결손금이 없는 상대방 법인의 사업으로부터 합병 후 발생한 소득에서 합병 전의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합병 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사업으로부터 합병 후 발생한 소득에서는 합병 전의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합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이외에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이 추가되는 형태의 삼각합병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나. 현행 기업인수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인수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외국의 제도를 비교

해 볼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업인수 과세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기업인수의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교부하고 기업인수로 인해 회사구조나 소유관계가 재조정될 뿐 사업은 계속되는 것이라면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형의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보아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인수의 요건은 비과세합병의 요건에 준하여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법인 설립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상장법인과 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투자자가 특정 외국에서 거둔 주식양도차익과 그 특정 외국의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거둔 주식양도차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 크기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조세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조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모든 투자자에 대해 거주지국과세를 원천지국과세로 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그린메일은 인수대상기업이 기업인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업인수 시도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① 주식의 이전합의를 맺기 전에 주식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② 주식을 보유한 2년의 기간중 어떤 주주 또는 주주와 협력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주주나 주주와 협력하여 행동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제의를 행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취득에 있어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린메일지

급금의 수령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특별부가세를 다시 부활하여 20% 내지 3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근무연수를 고려하여 정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재임연수 1년 기준으로 3개월분 정도를 한도로 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단기적으로는 고수익할인채권의 할인발행차금에 대해 어떠한 세제상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크본드의 발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기업인수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일반적인 정크본드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인수를 위해 발행되는 고수익할인채권의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기업인수·합병(M&A)의 의의

1. M&A의 개념
2. M&A의 유형
3. M&A 과세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

III.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현황

1. 국제 M&A 시장의 동향
2. 우리나라 M&A 시장의 동향

IV. 우리나라의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

1. 기업합병에 대한 과세제도

2. 기업인수에 대한 과세제도

V. 주요국의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

1. 미 국
2. 일 본
3. 정책적 시사점

VI. 우리나라 기업합병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기업합병 과세제도의 기본방향
2. 과세특례 요건의 정비
3. 비과세합병제도로의 전환
4. 합병차익과 영업권 과세규정의 개선
5.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의 개선
6. 삼각합병의 도입

VII. 우리나라 기업인수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기업인수 과세제도의 기본방향
2. 비과세인수제도의 도입 필요성
3. 주식취득과 관련한 과세문제
4. 주식양도와 관련한 과세문제
5. 적대적 기업인수 관련 과세문제

V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연구

- ◆ 노 영 훈
- ◆ 2006. 12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 양도를 통해 실현하는 자본이득을 다른 경상소득(ordinary income)들과 구분하여 개인소득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취급하는 분리과세제도를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소유자들의 주택처분 행태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환경하에서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제를 변화시켜 주택시장의 호·불황기에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된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부동산시장대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 동원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몇몇 시기별로 변경된 세율체계들이 정책당국의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의도대로 세 부담을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 부담이 연간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른 누진 세 부담 이외에 주택보유채수나 고가주택 여부 등의 요인으로 차등과세구조를 갖게 되는 현재의 세제가 가지는 형평성,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를 점검하였다. 특히 주택양도소득이 고소득자에게서 특별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가계조사에 포함된 표본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자산의 결합분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의 분포와 주택자산의 분포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가점유자가 이사를 통해 주거서비스 소비를 변경하는 거주주택 대체취득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 관점에서 매우 희귀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방법론’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자산소유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자본이득과 세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과세제도를 주택보유채수나 고가주택 여부 등의 기준으로 차등화시키지 말고 세에 대한 소득세의 일종이라는 기본시각하에서 경제인의 타 소득규모 등에 따라 차등과세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합산과세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비과세제도는 양도시점에서의 다주택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요건을 최우선 시하는 ‘주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또는 과세이연제도’로 바꾸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기존 선행연구 및 최근 연구동향

III. 주택의 양도와 주택시장

1. 주택과 양도의 개념
2. 주택시장의 구분과 동향

IV. 우리나라 주택양도소득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1. 분리과세 구조와 누진세율체계적 특징
2. 양도차익 산정방식의 차등화: 기준시가 대 실지거래가액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와 평가
4.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차등화정책
5. 주택 양도소득세의 소득기준 형평성 분석
6. 기타 거래주체별 구분에 따른 차등과세(개인 대 매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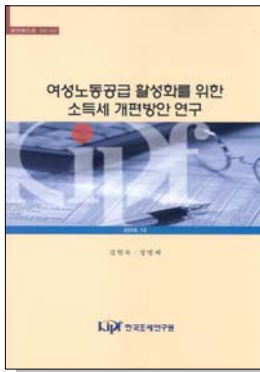
V. 외국에서의 주택에 대한 과세정책

1.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외국의 주택과세제도
2.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정책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 김현숙 · 성명재

◆ 2006. 12

최근 들어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평균수명의 급속한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노년인구 수도 함께 증가하여 경제활동도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동력 인구비중이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의 노동력 풀(pool)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휴노동력은 현재 생산가능연령인구인 15~64세의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집단과 실업상태인 인력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이며 여성 중에서도 가사, 육아,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기혼여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혼여성은 출산 및 육아를 통해 미래의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장려가 출산 및 육아부담을 가

중시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대신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면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둘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극복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기혼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정착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일하는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하는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소득세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에 참가한 영유아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보육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를 통해 보육을 지원하게 되면 출산율의 저하도 방지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후소득에 근거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를 효용함수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라는 가정하에 구축하고 2004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여 기혼여성이 소득세 부담에 따라 노동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남성의 노동공급함수와 달리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세후소득에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 지출을 차감함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였다.

세후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세후소득 자체가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것이므로 노동공급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변수의 내생성이 문제가 된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증분석시 도구변수법을 사용하였다. 세후

소득에 대한 도구변수들로 기혼여성의 직장경력, 교육수준, 시간당 보육비용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2SLS 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을 차감한 세후소득에 대한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은 0.23~0.26으로 세후소득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시 사용한 설명변수는 만2세 이하의 영아 유무, 만3~5세의 유아 유무, 자녀 수, 연령, 표본선택의 편의를 조정하는 항이다.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참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자녀 수나 연령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적인 소득세체계하에서는 실증분석시 최소자승추정법이나 도구변수법만으로 일치추정치를 구할 수 없고 누진적 소득세로 인해 생기는 비선형 볼록(non-linear convex)의 예산제약식하에서 이용가능한 이중오차모형(dual error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예산제약식상의 굴절점(kinked points)에서 노동공급시간과 여가의 선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추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를 반영하여 노동패널상의 개별 기혼여성마다 예산제약식을 만들어 균형점을 확인한 결과 굴절점에서 노동공급시간을 선택하는 기혼여성이 거의 없어 이중오차모형 대신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여 보상임금탄력성과 비보상임금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보상임금탄력성의 수치는 다른 나라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보다 낮은 편이어서 기혼여성의 세후소득이 증가할 경우 여가 대신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크기는 미국 등의 나라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노동공급함수 추정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보육비용 지출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때 과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종의 음(-)의 소득세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한 내용으로 면세점 이하의 기혼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허

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과 유사하게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전제로 하여 지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정률 혹은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여성의 노동공급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디자인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세액공제해주고 근로소득이 500만~700만원인 경우에는 정책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700만~1,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에 근로소득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급증-평탄-급감구간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의 확대는 9.5%, 신규 노동시장참가비율은 19.6% 증가하여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나타나는 소득창출효과는 필요재정규모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정 소득구간에 한하여 정액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2,400만~4,8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공급시간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혼여성의 예산제약식의 기울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근로소득세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의 45%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액이 50만~125만원인 경우에는 세액 50만원 초과분의 70%를 세액공제하며 근로소득세액이 125만~275만원인 경우 세액 75만원에서 세액 125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근로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노동공급을 활성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원 혜택을 면세점 이상에 국한함으로써 부

분취업(part-time)보다는 전업취업(full-time)을 상대적으로 더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시장참가는 거의 변화가 없고 노동공급시간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시의 세수 감소분에 비해 노동공급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에 의거할 때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음(-)의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와 다소 유사하므로 두 제도 간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고려한 후 두 제도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흥인력의 가장 큰 풀인 25~49세의 전문대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 정액이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노동시장참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의 소득에 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방식이나 금액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고향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기혼여성의 세후순소득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도출하고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도출된 임금탄력성의 크기가 크지 않은 가운데에도 저소득층의 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를 실시할 경우 상당한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향후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의 구성시 자녀 수나 자녀의 연령은 효용함수에 직접적인 요소로 사용되지 않고 가구의 예산제약이나 가구의 노동과 여가 간의 대체와 관련한 선호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CES 노동공급함수를 이용하여 남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방식을 여성에게 변용하여 사용하는 대신 여성 고유의 노동공급함수를 새롭게 구축하여 이를 이용한 임금탄력성 추정이 필요하다. 임금탄력성이 다소 낮은 이유도 기혼여성 노동공

급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둘째, 노동력의 질이나 추가적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고학력 기혼여성에게 효과가 없는 제도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제도를 고안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 목 차

I. 서 론

II. 사회여건의 변화와 여성노동공급

1.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변화
2. 향후 인력공급 전망과 여성노동공급 확대의 의의
3.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
4. 가구유형별 특성 및 세부담 분포
5. 맞벌이의 결정요인: 2005년 가계조사자료 Probit 분석결과

III.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1. 여성노동공급함수 추정
2. 여성노동공급과 자녀세액공제제도

IV.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1. 정책기본방향과 고려사항
2. 정책대안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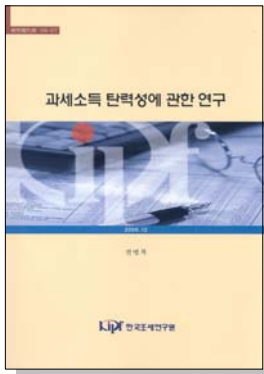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부록 II〉

〈부록 III〉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 전 병 목

◆ 200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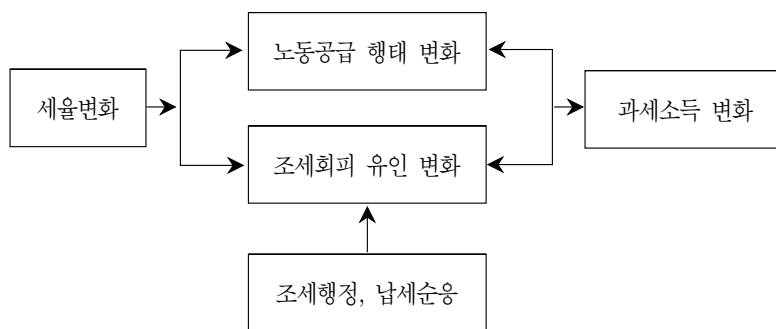
조세정책에서 효율성은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입구조를 구성하여 정부활동의 왜곡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재정 조달비용에 대한 정보는 정부지출의 타당성에 시사점을 제공해주게 된다. 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통해 비교가능하며 과세소득 탄력성은 초과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왜곡효과를 계량화한 것으로 과세대상 세원의 탄력성과 세율수준의 제곱에 의존한다. 따라서 세원의 탄력성은 조세의 효율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소득 탄력성은 초과부담의 결정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수추정, 그리고 세수를 최대화하는 세율수준(laffer rate)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현재 세수추계는 세율 변화에 따른 세원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세수 변화폭을 과대추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논의에서도 최고소득층의 반응도와 연계된 세수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정부의 소득세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소득 탄력성은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노동공급 탄력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세율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량의 변화, 과세베이스의 이동 등 행태 변화를 나타내며 이러한 행태 변화로 과세소득 또한 변화하게 된다. 만약 노동소득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노동공급 탄력성과 과세소득 탄력성은 동일하나 비노동소득이 존재할 경우에는 달라지게 된다. 또한 과세소득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납세순응비용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야기된 납세자의 한계세율 변화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세소득탄력성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982년~2005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세후소득률, 즉 (1-한계세율)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여 과세소득 탄력성을 추정한다.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의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탄력성과 장기탄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여 향후 세수추계, 세율결정 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과세소득 변화의 경로



경제적 왜곡을 측정하는 초과부담은 조세부과시 정부세수로 회수되지 않고 사라지는 소비자잉여로 정의된다. 즉, 상품에 대한 조세부과는 상대가격구조를 왜곡시켜 개인의 소비선택을 변화시키는데 이때 소비선택의 변화시 나타

나는 소비자잉여의 손실을 초과부담이라 한다. 즉 (소비자잉여의 변화 = 정부 수입의 증가 + 초과부담)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노동공급에 있어 초과부담은 세율(t), 임금(w), 그리고 노동공급량의 변화(Δh)의 함수로 나타난다. 여기서 노동공급량의 변화는 다시 소득탄력성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초과부담은 탄력성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B_{EV} = \frac{|\eta|}{2} wh_1 \left(\frac{t^2}{1-t} \right) = \frac{|\eta|}{2} w' h_1 \left(\frac{t}{1-t} \right)^2$$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분석과 시계열분석을 동시에 이용하여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횡단면분석은 세율의 10% 인하가 있었던 2002년을 전후로 실시하며 시계열분석은 1982년~2005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1982년~2005년 가계조사자료이며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용한다. 이는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산소득의 분배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에 이용된 한계소득세율은 각 소득의 한계세율을 가중평균하여 도출하며, 소득계층별 한계세율은 개인별 한계세율을 소득으로 가중평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한계세율은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되므로 근로소득의 한계세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은 Lindsey(1987)의 방법론에 따른 계층별 소득수준 변화를 이용한 방법과 계층별 소득비중 변화를 이용한 방법 등 두 가지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과세소득 탄력성의 추정은 세율 변화가 없었다는 가정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상적인 소득(혹은 소득비중) 및 한계소득세율을 실제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세율 변화로 인한 영향을 추정한다. 2002년 세율인하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2001년 자료에 기준한 시뮬레이션자료와 2002년, 2003년, 2004년 실제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과세소득 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러한 방

법론이 제시하는 탄력성은 행태 변화의 시차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단기탄력성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2002년 세율 인하로 인해 가구주들의 과세소득, 혹은 과세소득 비중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세율 인하 2년 후까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소득계층별 탄력성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다. 고소득층일수록 세후소득률의 변화에 민감하게 자신의 소득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낮은 통계적 유의성의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비조세적 소득 변화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방법론상의 한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성과중심 급여체계의 정착으로 세후소득률(즉 1 - 한계세율)의 변화와 관계없이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으나 횡단면 분석은 이러한 비조세적 소득증가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후소득률 변화에 따른 효과와 소득증가 추세에 따른 효과가 혼합되어 추정계수의 방향성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두 번째는 자료 자체의 한계이다. 개인소득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한계세율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즉 근로소득 수준은 개인의 노동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일정수입이 필요한 개인의 입장에서 크지 않은 한계세율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량을 짧은 시간 내에 변동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내생성의 문제이다. 즉, 한계세율(분석에서는 세후소득률)의 변화가 소득수준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소득수준의 변화가 한계세율의 변화를 야기하는 내생성의 문제 역시 추정치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기준 계층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소득증가로 인한 한계세율 증가(즉 과표구간 상승, bracket creep)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생성의 문제가 상당부분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샘플사이즈가 작은 문제점, 고소득층 자료가 많지 않은 서베이 자료의 한계 등이 낮은 통계적 유의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는 방안이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과 같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납세자료가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자료공개 노력이 필요하다.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소득계층별 차이(heterogeneity), 자료의 안정성, 비조세적 요인에 의한 효과 등을 통제하기 위해 소득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소득계층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면세자 비중, 고소득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납세자 반응 등을 고려하여 상위 소득 20% 이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계세율과 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명목최고소득세율을 도구변수로 이용한 2SLS 추정치는 OLS 추정치와 상당히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한 과표구간 상승(bracket creep)효과, 즉 소득 상승이 한계세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탄력성 추정치는 2SLS의 경우 대부분 OLS보다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과표구간 상승 효과로 OLS추정치와 과소추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SLS의 일차회귀식 t-통계량으로 살펴본 최고소득세율과 한계소득세율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한계소득세율의 변동에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넓은 소득공제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소득세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공제제도 변화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부호를 보여주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회귀식에서 세후소득을 변화에 대해 과세소득(혹은 과세소득 비중) 변화가 유의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추정모형 설정의 오류를 회귀결과로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 다른 방향은 회귀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는 점추정치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설정된 회귀모형이 경제적 이론에 배치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으로 모형설정의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따라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점추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립변수로 추세의 3승항까지 포함하여 비조세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는 최고 10%, 최고 5% 계층에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탄력성은 최고 10% 계층의 경우 0.79, 최고 5% 계층은 0.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방법론에 의한 미국 결과(Saez, 2004)가 나타내는 최고소득 1% 계층에 대한 탄력성 0.62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소득세율 변화로 인한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소득세율의 인상 등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탄력성의 원인으로 과세기반의 충실성, 납세자들의 반응도 차이, 기본적인 한계세율의 수준 차이, 분석 자료의 차이 등 크게 네 가지 요인이 대두될 수 있다. 그 중 과세기반의 충실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과세·면세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높은 탄력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시스템 미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 미비 등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세원이 비과세부문 혹은 조세회피가 용이한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납세자들의 반응도 차이, 기본적인 한계세율 수준 차이는 미국수준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분석자료의 문제는 탄력성의 증가 혹은 감소 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료 보완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분석자료와 가장 큰 차이는 사업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세율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부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탄력성 추정결과와 원인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우리나라 소득세제정책은 보다 세원의 충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과세기반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동시에 과세소득(혹은 비중) 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소득세율 인상 등에 대한 정책옵션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분석자료의 문제는 서베이자료의 한계, 즉 고소득

층의 탈락과 포괄소득의 협소함이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장애요인이므로 종합소득자를 포함한 개인별 납세자료를 이용한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연구관련 자료제공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수준별 탄력성 추정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2SLS 결과(회귀식 (2))를 살펴보면 상위소득 20%의 경우 탄력성은 1.34, 상위소득 10%는 2.05, 상위소득 5% 계층은 2.71로 상위소득층의 탄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추세변화를 통제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2SLS 결과(회귀식 (8))를 보더라도, 상위소득 20%의 경우 0.76, 상위소득 10% 0.79, 상위소득 5% 0.99로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위계층일수록 소득구조에 대한 개인의 조정능력이 높아 한계세율 변화에 대한 과세소득 변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소득구조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율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노동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을 통해 유추될 수 있다.

추정결과는 향후 소득세율 조정에 있어 소득계층간 탄력성 차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추정에 있어서도 상위 5% 계층의 소득비중 탄력성이 0.99로 매우 높아 동 계층의 과세소득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즉 과세소득의 탄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세율 변화는 그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세수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얻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 및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납세순응비용, 조세행정, 기타 세원의 관리 등에 의존하는 과세소득 탄력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강화를 통해 낮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 목 차

I. 서 론

II. 소득세제와 과세대상 소득의 변화

1. 과세체계
2. 소득공제
3. 세액공제
4.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변화

III. 과세소득 탄력성의 이론적 배경

1. 과세소득 탄력성과 초과부담
2. 과세소득 탄력성 추정시 고려사항
3. 개념정립과 방법론

IV. 과세소득 탄력성 추정: 횡단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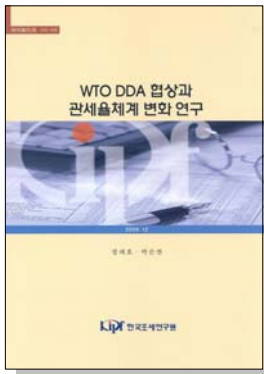
1. 추정 방법론
2. 자료
3. 분석결과

V. 과세소득 탄력성 추정: 시계열 접근

1. 추정 방법론
2. 자료
3. 분석결과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 정재호 · 박순찬

◆ 2006. 12

현재 WTO 체제 아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DDA 협상은 2001년 출발 당시 2004년 말 종결을 예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6년 7월 WTO 사무총장은 “DDA의 모든 분야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suspend)한다”고 선언까지 하였다. DDA 협상은 현재 조금씩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브라질, 미국 등의 국내 정치적 일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모든 회원국들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DDA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DDA 협상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DDA 협상이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런 관세율체계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에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할 WTO 양허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이다. 관세인하 폭은 스위스공식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

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선언(self declaration)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 적용될 스위스공식계수로 5와 10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스위스공식계수 10을 적용하면 DDA 이후 실행세율이 4.4%로 현재 실행세율인 6.3%에 비해 1.9%p 인하되어 이 정도의 관세율 인하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DDA 협상 타결 이후 모든 관세가 일시에 인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DA 협상 타결 이후 최종 연도에 적용할 중심관세율 수준을 미리 공표한다면 이에 맞추어 경제주체들 간의 자원 재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스위스공식계수 5를 적용할 경우 DDA 이후 평균 실행세율이 약 2.9%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관세율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의 평균관세율이 3% 중반인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특히, 현재는 모든 품목을 WTO에 양허하지 않았지만, 향후 DDA 이후에는 모든 품목이 양허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관세율 정책 운영에서 그 만큼 운신의 폭이 줄게 된다. 또한 스위스공식계수 5가 적용되면 우리나라에 적용될 최고 양허세율이 5%로 제약되어 현재 8% 중심세율 체계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계수 5가 적용된다면 현재와 같은 중심세율을 가진 기본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심세율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큰 폭의 관세인하는 우리나라 산업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인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목표 연도의 기본관세율을 제시하고 목표 연도에 도달하는 동안의 관세율은 탄력관세 등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관세인하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계수 크기와 상관없이 비선형 관세인하 공식인 스위스공식의 특징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들의 관세인하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섬유류의 관세인하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DDA 이후 이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는 섬유, 의류, 신발 등에 대해 중심관세율 8%보다 높은 10~16%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공식계수 5 혹은 10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 적용될 양허세율의 최고세율이 5% 혹은 10%로 제약되기 때문에 현재의 10% 이상의 기본관세는 DDA 이후의 실행세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기본관세율 구조는 DDA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섬유, 의류, 신발 등의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들 품목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들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DDA 협상이 이들 국가들의 관세율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섬유류, 특히 의류산업에서의 관세율 인하가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선진국의 의류산업에 스위스공식계수 5를 적용할 경우 10%를 넘던 의류산업의 평균관세율이 DDA 이후에는 3% 수준으로 약 70% 정도 하락하였다. 스위스공식계수 10을 적용하면 관세율이 4~5% 수준이 된다. 즉, 선진국의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의 관세율이 대폭 낮아져서 의류를 수출하는 대부분의 개도국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산업이 선진국의 대표적인 고관세 적용 산업이라면 자동차산업은 개도국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인도의 자동차 산업 평균관세율이 44.4%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25.6%, 브라질 22.4%, 불가리아 21.3%, 아르헨티나 20.8% 등으로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공식계수 15 혹은 20을 적용할 경우 관세인하율이 60% 전후로 나타나 관세인하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자동차 산업 관세율은 0.09%로 거의 대부분 무세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큰 의미가 없다.

전체 품목별 관세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들의 관세율 구조가 DDA로 인해 품목 간 관세율 편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은 기존 다른

품목들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스위스공식계수 10을 적용할 경우 섬유류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의 관세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계수 5를 적용하면 미국, EU, 일본 등의 관세율이 대부분 3% 미만으로 분포하여 관세인하 효과가 컸다. 따라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보다 작은 계수를 적용하여야 실질적인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 폭을 비교하면 선진국의 관세인하율이 개도국보다 더 크다. 물론 스위스공식계수에 따라 다르지만, 선진국에 가장 점진적인 스위스공식계수 10을 적용할 때와 개도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스위스공식계수 15를 사용할 때 관세인하율은 40~50% 구간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은 개도국에 보다 시장개방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관세율 구조 자체가 품목간 매우 큰 편차를 보여, 전체적인 관세인하 효과는 적지만 민감품목의 관세인하율은 크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스위스공식계수 30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30% 정도의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선진국들에 비해 관세인하 폭이 적다. 그렇지만 브라질에서 20%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섬유 등의 관세는 10%로 인하되어 50% 이상의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50% 인하라 하더라도 4%에서 2%로 감축되는 것과 20%에서 10%로 인하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인도는 기존의 관세율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스위스공식계수를 적용하여도 관세인하율이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더 크다. 이처럼 개도국 간에 관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세인하 효과에도 차이가 있어 개도국 간에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DDA 이후 국가별 관세율 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7개 국가그룹 14개 산업으로 구성된 다국가-다부문 CGE 모형으로 DDA 협상이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개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GTAP 데이터베이스는 무역장벽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포괄하는 관세상당치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관세상당치는 각 국가에서의 시장가격과 세계가격의 차이로 정의된다. 따라서 관세상당치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관세

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스위스공식에 따라 감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별 국가의 산업별 실제 관세율을 토대로 DDA 이후 관세율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스위스공식에서 낮은 계수를 적용하여 관세가 크게 감축되는 방식이 세계 경제의 후생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DDA 협상의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DDA 협상이 우리나라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섬유 산업과 의류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스위스공식으로 대표적인 고관세 적용 산업인 섬유·의류산업의 관세율이 크게 하락하여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섬유산업에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 산업은 농림수산업이다.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로 인해 제조업의 관세율이 크게 인하될수록 농림수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시장이 더 크게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의 생산이 더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가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이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스위스공식에서 낮은 계수를 적용하여 관세인하율이 클수록 세계 경제의 후생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수록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관세장벽이 낮을수록 관세 부과를 통한 경제적 왜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되도록 낮은 스위스공식계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생산자(산업)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 관세율 구조 분석결과도 감안해야 한다. 즉, DDA로 인한 급격한 관세인하는 산업별 관세보호 정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산업 간 자원 재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해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

고, 이런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한다. 그러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산업 간 적절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 두 측면을 적절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정태모형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세계 주요국가의 국내총생산이 일반적으로 더욱 증대된다. 이는 각국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총생산과 소득의 증가분을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여 자본스톡이 증대되는 경우 국내총생산과 소득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소득의 증가를 유도하는 자본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무역자유화가 일시적인 효과로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연쇄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DDA 협상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협상이 타결되고 이행기간이 끝나면 해당국에 고정되고 확정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긍정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기적 변화는 우리의 정책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DDA 협상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십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을 고도화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대응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 목 차

I. 서 론

II. WTO 주요 논의 및 평가

1. 논의 배경
2. 주요 쟁점 사항들
3. 향후 협상진행과 평가

Ⅲ. 공산품 관세율체계 변화

1. 분석 시나리오
2.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변화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변화 분석

Ⅳ. 경제적 효과 분석

1. CGE 모형의 구성
2. CGE 모형의 이론적 배경
3. 본 연구의 CGE 모형
4. 데이터 및 분석 시나리오
5.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 안종석 · 박노옥 · 정재호 · 김진영
- ◆ 2006. 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현실을 분석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본 효율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어진 규모의 교육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즉,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방향 - 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 또는 주어진 교육재원을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원을 더 조달하는 것이 국민의 후생 극대화라는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도 효율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교육재정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그러나 한 권의 보고서에서 교육재정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본고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재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첫 번째로 초·중등교육의 다양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배분 방식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는 인구변화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규모를 평가하고, 재원조달에 있어 학부모와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재원조달

구조, 효율적인 대학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연구한다.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확실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공교육 체계의 재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건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학생 수에 비례하여 재원이 배분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경우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물론 학교 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표준만 만족시킨다면 그 이상의 부분에는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수수료나 수업료 부과를 통하여 교육지출을 증가시켜 교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개별 학교의 재원조달 자율성을 확대시킬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부 방안은 자립형 사립고 모형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자율성과 형평성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모형과 차이가 있다.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없는 자율화는 당연히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화를 통한 공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확보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교육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같은 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사례에서 살펴본 대로 외국에서는 사립과 공립이 통합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도 이미 통합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커다란 환경변화 속에서 초·중등교육 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향후 지속될 학령인구의 감소는 추가적인 재정확대 없이도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만, 그와 동시에 진행될 교원 수급의 감소와 교원의 고령화 현

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교육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를 연구한 기존 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2005)과 박종렬 외(2004)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학령인구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추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지역 간 구분을 통해 지역 간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 간 차이를 교육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시설과 교원 수급에 연계시켜 논의하였다.

향후 학교 신설에 따른 재정소요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와 관련된 교육재정에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학령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자치단체라면 최소한 용지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설립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현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교원 수급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현재의 교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향후 4~5년 안에 영국, 프랑스,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8년 이후에는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으로, 그 이후에는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의 정원 조절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초등교원의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국립대학을 통해 초등교원을 계속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 공급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교원의 연령구조 고령화이다.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인건비 비중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교사의 경력연수 차이이다. 즉, 교사의 평균 경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이런 사실은 교원이 고령화될수록 전반적인 교육재정의 경직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경력 교사의 비중 증가는 호봉체제인 현재의 인건비 구조에서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준다. 그러므로 교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호봉구조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1) 재정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2) 공공부문 부담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3)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식은 무엇인가?

재정규모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로 많이 활용되는 국제비교를 통해 그 정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외에 인구변화의 영향과 장기적인 교육정책 목표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문제는 규모보다는 구조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유사한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을 대학교와 전문대학으로 구분해 보면 교육비 규모가 작은 이유는 전문대학의 교육비가 적기 때문이며, 대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교육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화의 영향을 보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장기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장기 비전에서도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확대보다는 구조조정 등 체제의 개혁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담 중 어느 쪽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재정수지 관점에서 보면 교육비 투자는 장기적으로 조세수입의 증가를 유발한다. 교육의 증가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조세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OECD가 추정한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수입의 증가 규모가 교육비 투자규모보다 큰 것으로 판

단되며,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와 정책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자금 융자제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면서 융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 부문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모든 분야에 그리고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재정지원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원칙은 시장의 가격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방향을 모색해 보면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립대학의 법인화이다. 이는 재정의 관점에서 특정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포괄보조금 또는 일반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반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대학 내의 모든 분야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외부효과는 작으나 사적 편익이 커서 시장에서의 교육 수요가 많은 부문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반면 사적 편익은 작으나 사회적 외부효과가 큰 기초학문을 경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학생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학자금 융자제도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시장의 가격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학자금 융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추어 볼 때 지원 규모가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초중등교육의 다양성·수월성 제고를 위한 교육재원 배분방식
개편방안

1. 문제인식과 연구배경
2.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및 특수 목적고 현황과 문제점
3. 외국의 초중등교육 재정체계 개요
4. 교육재정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근거
5. 학교 선택권과 개별 학교 재원배분을 통한 다양성과 수월성
제고방안
6. 정책적 시사점 및 소결

III. 인구변화를 고려한 초중등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

1. 초중등교육 재정의 특징
2. 인구변화가 지역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3. 교육비 지출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4.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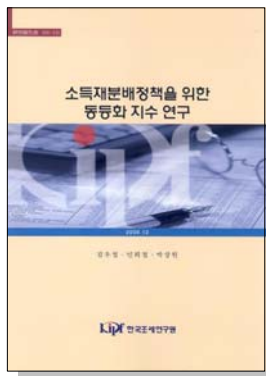
IV. 고등교육 재정의 효율화 방안

1.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특징
2. 대학재정 규모의 평가
3. 재원부담 주체
4. 재정지원 방식
5. 요약 : 고등교육 재정의 효율화 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 김우철 · 민희철 · 박상원
◆ 2006. 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동등화 지수를 다양하면서도 정치한 방법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가구별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제II장에서는 기존의 동등화 지수 연구를 바탕으로 동등화 지수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산출방법을 요약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동등화 지수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III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등화 지수를 산출하고 이것을 기존 방식의 수치와 비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출의 가구유형별 비율 추정, 앵겔 접근법, 수요함수접근법 등을 사용하여 동등화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기존의 방법들을 총망라하면서 한층 진일보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가구 유형별로 소비지출 수준이나 비율을 단순 비교한 것에 따르면, 자녀 1인이 추가될 때마다 소비지출의 수준 자체는 증가하지만 증분 자체는 한계적으로 감소하여, 가구 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앵겔 접근법과 수요체계 모형에 적용한 추정 결과는 - 법칙(square-root N-rule)이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상은 - 법칙이 자녀와 성인의 차이를 무시하고 부정확한

규모의 탄력성을 이용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동등화 지수는 추가 자녀에 따른 소요 비용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비해 소자녀 가구의 지출 소요를 과소계산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였다.

제IV장에서는 소득세의 가구별 평균유효세율을 도출하고 가구별 세부담을 동등화 지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현재의 소득세제가 다른 동등화지수에 비해 자녀에 대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제V장에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이 값이 동등화 지수의 사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 유형 간 불평등도와 유형 내 불평등도를 구분하고 전체 불평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별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데 조세·정부이전지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V장에서의 첫 번째 결론은 동등화지수의 선택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의 크기가 지니계수에 대한 표준오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세 및 정부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동등화지수의 선택에 거의 무관하게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제V장의 두 번째 결론은 가처분소득에 대해 구한 지니계수를 가구유형 내부의 불평등도와 가구유형 간의 불평등도로 분해한 결과, 가구유형 내부의 불평등도가 가구유형 간 불평등도보다 10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구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행되는 재분배정책(예를 들어 자녀 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구유형 내부의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소득분배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I. 서 론

II. 동등화 지수의 개념과 기존 연구

1. 동등화 지수의 개념
2. 효용을 이용한 동등화 지수의 정의
3. 동등화 지수 산출 방법
4. 기존의 동등화 지수

III. 가구 유형과 동등화 지수

1. 이용 자료 설명
2. 가구 유형별 소비지출 분포와 동등화 지수
3. 엥겔(Engel) 접근법에 의한 동등화 지수
4. 수요함수 체계에 의한 동등화 지수: Quadratic Almost Ideal 함수 접근법

IV. 동등화 지수와 소득세제

1. 서 론
2. 가구 유형별 유효세율의 도출
3. 소득세제의 특징과 가구 간 세부담 평가

V. 동등화 지수와 소득재분배

1. 소득분포 불평등도의 측정
2. 소득분포 불평등도에 미치는 동등화 지수의 영향
3. 지니계수와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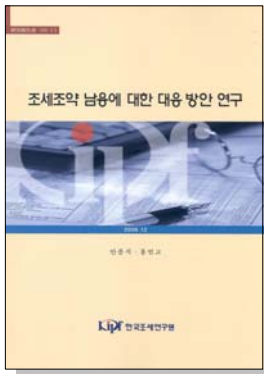
VI.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각종 동등화 지수의 비교

〈부록 2〉 소득세 과세체계

〈부록 3〉 제IV장 2절에 사용된 추정결과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안중석 · 홍범교

◆ 2006. 12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국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 그 특징과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세조약 남용이란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누리는 조약상의 혜택은 원천지국의 과세권 제한과 거주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약 남용이란 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거주지나 소득의 형태를 바꿔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A국과 B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C국 거주자가 A국에 명목상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 B국에 투자함으로써 A-B국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원천지인 B국에서 조약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A국이 조세피난처이거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경우 A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이중적 비과세(double non-taxation)라고 하는데 이중적 비과세는 이중과세와 마찬가지로 투자 등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조약 남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근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의 외환위기 과정이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직후 도입된 외국자본이 투자자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이유로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들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드러난 거주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이중적 비과세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약 남용은 원천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조약 남용은 국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의 국민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며, 때로는 ‘국부 유출’로 표현되기도 한다. 반면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는 조약 남용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남용을 억제하여 소득발생지의 ‘국부 유출’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전제로 한 자본수입국 모형을 분석하여 이러한 통상적 인식의 진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조약 남용은 그 자체가 외국인투자자의 원천지 실효세부담을 인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인자본의 유입 및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납세자가 지불하는 조세회피 비용은 자본수입국의 국민에게 귀착된다. 이는 조약 남용 방지규정의 정비를 통해 조약 남용의 비용을 증가시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조약 남용 방지제도를 정비하여 남용 비용을 증가시키면 원천지 실효세부담을 인상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조약 남용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조세회피 비용이 증가하면 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조세를 더 많이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약 남용 방지제도가 소득발생지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견해는 납용 방지제도의 정비를 통해 조약 납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투자의 감소와 원천지 국민에게 귀착되는 조세회피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과 제도의 정비가 납용을 부추켜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약 납용 방지제도의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약 납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조약 납용을 묵인하는 편이 낫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본 분석은 원천지국의 경제적 효과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거주지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조세조약 납용은 직접적으로 원천지 과세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거주지 과세를 회피하도록 촉진하는 부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조약 납용이 용이한 경우 투자자들은 국내투자보다는 국제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거주지 투자는 줄어들고 거주지국의 과세기반도 축소된다.

또한 국제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종종 국가경제적인 관점과 세계경제적인 관점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수입국은 조약 납용을 묵인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조약 납용은 궁극적으로 원천지와 거주지에 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중적 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중적 비과세는 이중과세와 마찬가지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가속시킨다.

그 외에도 경제분석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국제조세체계 및 국내 법질서의 안정성, 조약 납용이 조세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본 모형의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약 납용을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분석에 이어 조약 납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만 원천지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약 남용 방지정책이 원천지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약 남용 방지제도는 크게 국내법에 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과 조세조약에 남용 방지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법상의 규정은 실질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제기본법상의 실질과세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3항에서는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기본법 제14조와 동일한 내용인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조약규정과 충돌문제, 경제적 실질의 개념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명확성을 확보하여 실질과세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독일과 같이 혜택의 제한(LOB)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켜 남용의 가능성이 큰 납세자에게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특히 조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미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낮은 세율 적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가입한 비엔나 조약에 따르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제법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아직도 자본수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조약에서 발생하는 남용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OECD에서도 조약은 양 체약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개정보다는 협의에 의한 조약의 개정을 보다 나은 정책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선원천징수 원칙을 도입하더라도 많은 조세조약에 LOB 조항을 도입하여 그것이 보편적인 규정이 되었을 때 도입하는 것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내법 개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제도의 사전승인 조건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5 제2항의 1~8에 열거된 사전승인 요건 중 첫번째인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체약국 거주 법인’은 상장법인 등 다른 조건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6~7에 열거된 조건들이 매우 구체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LOB 조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자체 판단에 의해 조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조세조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각 조항별 실질과세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OECD나 미국의 모델 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LOB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과 같은 신법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조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신·일조약에서 보듯이 상대국에서 조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있을 시에는 우리나라가 조약 개정을 자동적으로 요청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의 각 조항별 실질과세원칙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약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LOB 조항의 경우 이미 국내법에서 다른 조건 없이 조약 적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성격을 밝혀 놓았으므로 조약에서는 그 내용들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단, 능동적 사업활동에 대한 규정과 투자회사에 대한 규정이 유연성이 부족하여 조약에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국내법은 조약 적용의 충분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조약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 사례 및 특징

1.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
2. 조세조약 남용의 유형 및 사례
3. 조세조약 남용의 특징

III. 조세조약 남용 및 남용 방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존문헌 조사 및 본 연구의 특징
2. 기본 모형 -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조세조약 남용의 경제적 효과분석
4. 조약 남용 방지정책의 효과분석
5. 경제적 효과분석 요약 및 조약 남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

IV. 모델 조약상의 남용 방지규정

1. OECD, UN 및 미국의 모델 조약 비교
2. 남용 방지조항의 비교

V. 주요국의 조약 남용 방지제도

1. 스위스
2. 미 국
3. 일 본
4. 독 일

VI. 조세조약 남용 방지제도의 비교

1. 국내법적인 대응
 2. 조세조약상의 대응
 3. 정치적 대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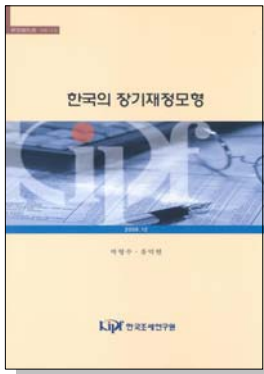
VII. 우리나라 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1. 우리나라의 제도 현황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3.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미국과 주요국 간의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조항

〈부록 2〉 세 개 모델 조약의 조문 비교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 박형수 · 류덕현

◆ 2006. 12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연금·의료 등 재정 및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사회복지 및 의료 관련 지출확대가 재정건전성 약화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거시경제·재정의 3개 부문 간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재정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분석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50년까지 향후 45년간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해 보았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 또는 특정분야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수 발표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각기 따로 추진되면서 일관성 있는 재정전망에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에 이용하였던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전제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추계에 이용된 것과 차이가 나는 등 기존 연구결과들만으로는 일관성 있는 재정전망이 불가능하여 재정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들을 포괄하면서도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에 전망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재정을 장기전망할 수 있으며,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에 대한 시나

리오가 바뀔 경우 우리나라 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장기재정모형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이들 기존 연구들은 인구부문과 거시경제부문 또는 인구부문과 재정부문과 같이 2개 부문만을 포괄하는 부분모형에 그쳐, 인구구조의 변화·거시경제·재정의 3개 부문 간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통합모형’의 개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EU, 미국, 호주, 영국 등 재정선진국들도 모두 인구추계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률 등 거시경제를 전망하고, 이러한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치를 바탕으로 설정된 시나리오하에서의 재정전망치를 추계하는 장기재정전망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정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고령화가 잠재성장률 또는 분야별 재정지출에 미치는 한쪽 방향에서의 영향만을 분석하였을 뿐 재정정책의 변화가 인구구조 또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다른 방향에서의 영향(예를 들면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 강화가 출산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필요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부문·거시경제부문·재정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이들 3개 부문 간의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재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보다 과학적인 모형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구블록〉, 〈거시경제블록〉, 〈재정블록〉별로 탄성치 등 각종 파라미터들은 과거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Estimation)하거나 연구수행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국내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활용(Calibration)하였다.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II장부터 제IV장에서 〈인구블록〉, 〈거시경제블록〉, 〈재정블록〉별로 장기재정모형을 구축한 후, 현재 상황에서의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에 전망에 의거하여 2050년까지의 일관성 있는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2010년까지는 2006년 9월에 발표된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치를 사용한 반면, 2011년부터 2050년까지 성별·연령별 인구,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항목별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전망치들은 본 연구에서 구축된 장기재

정모형을 이용하여 추계되었다. 제 V장에서는 이러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전망치 이외에 〈인구블럭〉의 핵심변수인 출산율과 사망률, 〈거시경제블럭〉의 핵심변수인 성별·연령별 고용률 및 총요소생산성, 〈재정블럭〉에서는 최근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보육관련 정책 강화 및 연금개혁 등과 관련된 변수가 변동할 경우 장기재정모형에 의한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및 정책 시뮬레이션(policy simulation)도 실시하였다. 〈부록〉에서는 EU, 미국, 호주, 영국 등 재정선진국들의 장기재정전망 방법론 및 최근 전망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우리나라 장기재정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한 결과를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97%로 2011년 수준(20.52%)에서 다소 상승하는 반면 국민부담률은 26.38%에서 29.27%로 3%p 가까이 상승하는데 주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관련 부담이 증가하는 데(GDP대비 1.97 → 3.02%)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통합재정수입의 증가 규모는 0.20%p(GDP 대비 24.72 → 24.9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GDP 대비 23.14% 수준에서 2050년 35.57%로 12.43%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의 증가(12.66%p)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에 의해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지출규모 증가가 10.23%p나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의 증가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1.5~2.0% 정도의 적자에 그치는 반면, 국가채무/GDP 비율은 2011년 31.43%에서 2022년 28.85%까지 하락하였다가 상승세로 반전되어 2050년에는 43.5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이외에 〈인구블럭〉의 핵심변수인 출산율과 사망률, 〈거시경제블럭〉의 핵심변수인 성별·연령별 고용률 및 총요소생산성, 〈재정블럭〉에서는 최근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보육관련 정책 강화 및 연금개혁 등과 관련된 변수가 변동할 경우 장기재정모형에 의한 우

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다섯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사망률 및 여성사망률이 각각 15.3% 및 20.1% 정도 하락하면(시나리오A) 2050년 총인구가 약 86만명(베이스라인하에서의 2050년 총인구의 2.0%) 정도 증가하지만 부양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저축률 및 총투자율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데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다음으로 정부가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정책을 강화하여 1인당 지원규모를 2,314달러(1995년 PPP기준, 최근 OECD 평균수준)에서 8,009달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덴마크)로 인상하는 시나리오B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2050년까지 1.66명(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1.30명)으로 상승하고 25~54세 여성고용률이 상승하게 되어 2050년 총인구가 약 318만명(총인구의 7.4%)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는 부양인구 비율 상승으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2030년대부터는 인구증가 및 25~54세 여성고용률 상승으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로 잠재성장률이 상승하지만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 국세수입 증가규모는 작은 반면 관련 지출 증가는 상대적으로 커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5~64세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시나리오C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는 시나리오D의 경우에는 잠재성장률 상승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및 국방·이자 관련 지출 감소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가 감소한다. 또한 4대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시나리오E의 경우에도 사회보장부담률의 증가로 국민부담률은 상승하지만 사회복지 및 보건지출 감소와 이자 지출 감소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4대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할 경우 총요소생산성 개선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3%p 정도 상승하는 시나리오D와 그 규모면에서 비슷할 정도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최근 연금제도 개혁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정정책 당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베이스라인 전망 및 민감도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2050년까지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2% 미만, 국가채무/GDP 비율도 40%대로 최근의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황이 가장 악화되는 시나리오B의 경우에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2.3% 정도, 국가채무/GDP 비율도 51% 정도로 EU의 재정적자 3% 및 국가채무 비율 60% 제한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들은 현행 제도 및 정부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국세수입의 자연증가분을 감세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변동 효과만을 감안하거나(베이스라인) 특정분야 재정지출을 다소 확대(시나리오B)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추진되거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현행 예산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출증가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본 연구에서의 전망결과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인구부문·거시경제부문·재정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이들 3개 부문 간의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국내 최초의 장기재정모형을 개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인구블록〉에서 현행 인구추계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망률의 추정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거시경제블록〉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별 고용률 전망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연구 및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재정블록〉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입에의 영향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던 최준욱 편(2005)을 보다 발전시키는 연구들이 기대된다. 장기재정모형에 인구부문·거시경제부문·재정부문 간 상호연관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재정규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이나 고등교육 및 SOC에 대한 투자나 소득재분배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본 연구에서 반영한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이나 R&D투자 이외에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인구부문

1.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2.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년 1월)
3. 인구추계 결과

III. 거시경제 부문

1. 잠재성장률
2. 기타 거시경제 변수

IV. 재정부문

1. 재정전망 범위
2. 세입부문
3. 세출부문
4. 재정전망

V. 민감도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1. 시나리오 설정
2. 민감도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주요 선진국의 장기재정전망

1. EU의 장기(2005~2050년, 50년) 재정전망
 2. 미의회 CBO의 장기(2003~2050년, 50년) 재정전망
 3. 호주정부의 장기(2002/03~2041/42년, 30년) 재정전망
 4. 영국정부의 장기(2004/05~2034/35년, 30년) 재정전망
-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박형수 · 류덕현

◆ 2006. 12

최근 선진국뿐 아니라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미 복지부문의 재정투자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부담은 적지않은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재정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기조가 ‘양입제출의 원칙’하에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내주었던 기초적인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즉, 과거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 주었던 재정부문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재정소요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이지만 최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감안하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의 총량적인 재정목표를 제약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운용목표로 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나 지출증가율 혹은 국가채무에 대한 제약을 두어 일시적으로 정책운용의 폭을 좁히지만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확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부문이 여타 다른 경제부문보다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경기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제약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재정건전화에 대한 위협을 고려한다고 하면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재정준칙을 둘러싼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한 번도 시행되지도 않는 정책운용의 틀에 대한 고찰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향후에 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의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미 각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재정준칙의 이론적·경험적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재정준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재정준칙의 정의, 필요성, 형태별 구분 및 재정이슈별 재정준칙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제Ⅲ장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의 운용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다. 외국의 재정준칙의 운용경험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향후 도입에 따른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의 재정준칙 운용과정에서 도출되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우리나라의 향후의 제도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은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운용, 정확하게는 예산편성의 원칙이었던 양입제출 원칙과 최근의 중기재정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통화준칙인 물가안정목

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은 본 보고서를 요약하고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재정준칙의 정의, 필요성, 형태, 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문헌을 통해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먼저, 재정준칙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재정준칙의 구성요소와 갖추어야 할 특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다음으로 재정건전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안정화의 기능 등 탄력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재정준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재정준칙을 목표변수의 선택, 엄격함의 정도, 집행과 점검 여부의 주체, 그리고 회계기준 등에 따라 형태별로 구분한 뒤 실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의 효과 및 성과를 경기안정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기준에 나누어 이론적인 부분과 실증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III장은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호주·핀란드·독일·일본·네덜란드·뉴질랜드·스페인·스웨덴·영국 등 9개 국가, 재정준칙이 없다고 응답한 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4개 국가 및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스위스 등 총 14개 국가와 EU의 재정준칙에 대해 사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된 배경,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운용추이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운용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제IV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 신뢰성 있는 재정운용정책이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우선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재정정책을 지배했던 양입제출의 원칙에 대해 도입배경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동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도 해보았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준칙인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 경험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에 감안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제3절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적 기반 및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발표되는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준

칙으로서의 역할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적 토대 및 총량적 재정목표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재정관련 법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 차

I. 서 론

II. 재정준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재정준칙의 정의
2. 재정준칙의 필요성
3. 재정준칙의 분류
4. 재정준칙의 효과

III. 선진국의 운용사례 연구

1. 스웨덴
2. 영 국
3. EU
4. 미 국
5. 일 본
6. 기타 국가
7. 외국사례 연구의 시사점

IV.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1. 양입제출의 원칙
2. 통화정책의 준칙 : 물가안정목표제
3. 재정준칙의 도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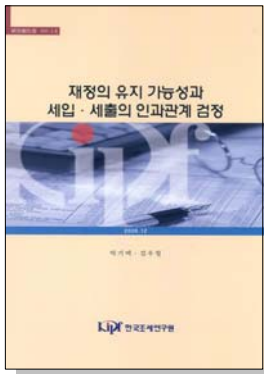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WB 예산집행 및 절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부록 2〉 영국의 재정관련 보고서

〈부록 3〉 SGP에 포함된 EMU의 재정준칙



재정의 유지 가능성과 세입·세출의 인과관계 검토

◆ 박기백 · 김우철

◆ 2006. 12

GDP 대비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유지 가능한가(sustainable)에 대한 논란이 많다. 1980년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경험한 사항이며, 우리나라도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정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커지고 있는 논란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재정의 유지 가능성 또는 재정 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정부의 재정 운영 행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의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채무나 정부지출 및 재정수지를 조정하였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흑자가 정부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의 흑자(순적립 규모 기준)를 제외하였다. 둘째, 외국환평형채권은 순수 금융성 채무이므로 부채 규모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무는 외환위기 발생시점인 1997년에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단순한 시계열 접근법을 이용하는 대신에, Bohn(1998)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국가채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반응을 이용하지만 재정기조의 변화가 있었던 시점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수정된 Bohn (1998)의 회귀방정식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재정준칙을 사용하여 정부부채 수준을 감소시켰으며, 균형재정준칙이 사용되지 않은 기간에는 정부부채가 증가할 경우 재정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채무 변화와 재정수지 간에 존재하는 단기 동학적 관계는 VAR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변화, 성장률로 구성된 삼변수 VAR 모형에서 국가채무 동학식(debt dynamics)에 기초한 구조적 충격의 식별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채무 충격 발생에 따른 재정수지의 동태적 반응을 검토하였다. 축약형 VAR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전기의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에 대해 금기의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S2)와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D2)를 중심으로 분석한 축약형 VAR 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전기의 국가채무 비율 1%의 증가는 금기의 재정수지를 0.22%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적 VAR 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외생적 요인에 의해 국가채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초 재정수지가 시간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초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가장 높은 흑자를 나타내며, 3~4기(년)까지 흑자 폭은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때 전 조정 과정에 걸쳐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 방식이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 중 어느 일방이 다른 하나를 선도적으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세입 변화가 세출의 변화에 선행한다는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Friedmann(1978)의 주장처럼 금기의 세입 증가가 다음 기의 세출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으로 인해 기존의 재정적자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세출이 주도적으로 먼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세입이 적응하게 된다는 세출-세입 가설이 성립한다면, 일시적인 세출 증가는 추후 세입의 증가를 통해 충당되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정 안정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VECM 모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세입과 세출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변화로 구성된 단순 VAR 모형에 전기의 재정수지차를 추가함으로써 금기의 세입과 세출이 전기의 재정수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도 검토하였다.

VECM 모형과 확장 VAR 모형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의 변화는 단기동학 관계에서 나타나는 교차시차항(cross lagged term)을 통해서는 어느 방향으로도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세입의 변화는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다음 기의 세출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세출의 변화가 초래하는 재정수지의 불균형은 다음 기의 세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수지 균형의 회복이라는 경로를 통해서만, 세입에서 세출로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세입의 변화가 장기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세출의 변화를 선도하는 반면, 세출의 변화는 어느 경로로도 세입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 운영방식이 다소 경직적이며, 세수의 변화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금기의 일시적인 세출 증가는 다음 기의 세입 증가에 의해 즉각적으로 충당되지 않기에 재정수지 적자는 단기에 보전되기 어렵지만, 재정수지 적자폭은 주로 세출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는 재정의 안정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지만, 재정의 안정성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측정 및 자료

1. 국가채무의 범위 및 측정
2. 자 료

III. 재정 유지가능성 : Bohn의 검정

1. 이론 및 기존 연구
 2. Bohn's test
- III장 부록 : 기존의 안정성 검증

IV. 국가채무 변화와 재정수지의 단기 동학 관계

1. 단위근 검정
2. 상관관계
3. 분석 모형과 추정 결과

IV장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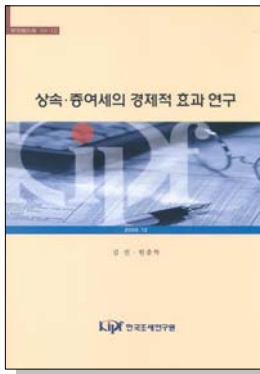
V.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1. 기본 가설 및 기존연구
2. 자료와 사전 분석
3. 단기동학 모형에 기초한 인과관계 분석

V장 부록 : 단순 VAR 모형

VI. 결 론

참고문헌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 ◆ 김 진 · 원종학
- ◆ 2006. 12

본 연구는 고령화, 세계화, 선진화의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환경에서 올바른 상속·증여세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 세계화, 선진화에 대비한 올바른 상속·증여세제도를 위한 기본연구 틀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상속·증여세가 세대 간 부(wealth)의 무상이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경제학적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의 무상이전이 다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엄밀히 분석하여 상속·증여세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힌 후에,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이론 및 실증분석 전에, 상속·증여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의 규모 및 비중, 법정한계세율 및 유효평균세율을 중점으로 파악하였고, 다기간 의사결정모형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거론될 경제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상정한 경제모형에서 증여와 상속은 부모세대의 소비재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재화의 가격을 계산할 때에 증여·상속세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모형의 결론은 균형에서 증

여·상속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다기간에 걸친 증여·상속세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모든 조세체계가 그러하듯이, 상속·증여세도 국가 간 과세근거 및 과세방식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였다. 또한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대표적인 분류법인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 그리고 다른 변형들에 대한 입장을 각 나라들이 상이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자산이전모형을 통한 분석을 보완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부가 현금인 경우를 상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모형을 통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물론 각종 자산이나 부를 도입하더라도 증여와 상속의 기회비용으로서의 가격이 다기간에 걸친 증여의 균형수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증여세가 증여나 상속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은 현실 정책에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증여·상속이 다기간에 걸친 의사결정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세수에 대한 효과에서 단기효과만이 아니라 장기효과를 중첩적으로 고찰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1975년 이후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증여세수의 증여가격 탄력성이 단기에는 15.5의 높은 수치를, 장기에는 5.6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법정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시장에서의 증여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단·장기 탄력성의 비교 결과는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시장의 반응이 매우 탄력적이고 또한 장기적 영향을 줌을 나타낸다.

둘째, 상속과 증여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증여·상속의 이전비중에 각종 증여·상속의 재산공제의 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각종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이 부의 무상이전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상속세수보다 증여세수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는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동일한 근거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상속·증여부문의 조세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포괄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정책은 다른 주요 세목의 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를 결정하는 세목에 대해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의 하나로서 상속·증여세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세대의 생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모세대의 자산관리 양상이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각종 공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부모세대의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비와 자녀세대로의 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소비의 증가가 부의 이전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이런 주요 변화를 인지하면서 상속·증여 부문의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학계에서 제기된 개선방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중간에 위치한 상속·증여세의 특징 때문에 소득과세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실효세율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 행위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 설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유산과세형을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장형 과세의 하나로 실행된 가업상속제도의 공제액 인상, 연부연납기간의 연장, 그리고 한시성의 제거 등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의 접경에 있는 세목으로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유산취득세형과 유산세형, 그리고 많은 변형들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세부담지표를 계산하고 자산이전행위의 세부담 탄력성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탄력성을, 장기적으로는 더 낮은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차이점이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관측된 연도의 거시경제적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지는 차후의 연구로 돌린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상이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는 데에 유의할 몇 가지 점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전이전비율은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볼 때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구조는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시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유의하여 실효세율구조를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조세구조(tax mix)가 향후 완성된다면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의 회박성과 자산이전행위에 대한 환경의 급변성은 향후 중장기적 상속·증여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유산세형의 유지 또는 유산취득세형으로의 변화, 상속세의 완화 방안으로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증여세와 소득과세의 형평성, 생애에 걸친 과세체계의 확립 등 많은 사안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과세자료의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연방정부와 재계의 득과 실을 계산하고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상속·증여과세의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현 황

1. 주요 현안
2. 상속·증여세 현황
3. 상속·증여제도 변화

III.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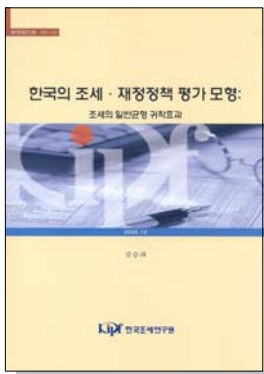
1. 미국
2. 일본
3. 기타 주요국가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IV. 이론 및 분석

1. 기존 연구
2. 상속·증여행위
3. 자산이전모형
4. 부의 이전에 대한 실증분석
5. 시사점 및 한계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 김 승 래

◆ 2006. 12

최근 정부지출 증대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반면 새로운 세원 확보와 세수증대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세·재정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은 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 매년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세제개편의 범위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조세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특정 시점의 경제의 한 단면(snapshots)에만 치우친 주장과 논거는 진정한 세부담의 분포에 대한 잘못된(misleading)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정책의 효과가 일부 산업이나 특정 소득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복잡다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균형적 측면에서 조세의 귀착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에서 조세개혁의 방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간소한 세제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향후 우리 경제의 조세제도를 선진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및 재정정책이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에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

족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다부문·다소득계층·다세대 생애주기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조세관련 정책 변화가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후생효과 및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보다 종합적인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그동안 자료 및 기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즉 (i) 생산자 및 소비자의 행태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여 기준경제의 모형보정에 활용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한 점 (ii) 산업간 거래가 내생화된 다부문 경제모형의 구도하에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연간소득분위별 후생변화의 측정에서 나아가 제한적이거나 생애소득분위별 후생변화를 측정한 점 (iii) 조세의 효과분석에 있어 원천측면(sources side)뿐만 아니라 사용측면(uses side)에서 야기되는 일반균형 효과를 포함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생산기술 및 소비패턴의 내생화를 보다 일반화된 행태방정식의 추정을 통하여 모형구축에 이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세제개편의 귀착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간소득기준의 계층분류에 의존하는 연간 세부담 귀착과 단일세대내의 형평성 평가에서 나아가 단기적·중장기적 후생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애소득기준의 평생 세부담 귀착과 세대간의 형평성 평가도 동시에 시도하였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중장기 조세개혁과 같이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각종 세부담의 동시적 변화가 사회의 각계각층에 미치는 전·후방전가 및 귀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조세관련 CGE모형들이 모형 구축과정에 있어 계량경제학적인 추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적절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부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은 기존 모형 대비 각종 가설이나 가정들을

완화하여 현실경제로의 모형 적합성을 높이고 실제 정책분석에의 적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정책시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소득기반 과세에서 소비기반 과세로의 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개편 시나리오별로 세부담의 동태적 귀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자본소득(법인소득) 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부담의 세수중립적 이동과 노동소득 과세의 소비과세로의 세수중립적 전환을 세대별 후생의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의 경우, 즉 자본소득 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부담의 세수중립적 이동은 현재세대(current generations) 중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젊은 층과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의 생애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세계개편의 동태효과는 소비수준 대비 신규 자산형성과 축적에 있어 유리한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보다 유리한 생애귀착효과를 가지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즉 노동소득 과세의 소비과세로의 세수중립적 전환도 비슷한 방향으로 작용하나 생애주기에 있어 중년층 이후 하락하는 노동생산성 추이 및 자본과세 대비 노동과세 완화의 열등한 동태적 효율개선 효과로 인하여 각 세대별 생애후생 증진효과가 자본소득 개편에 의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비중의 현재세대의 후생손실이 예상되어 재분배 측면에서 세대간 상충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법인세 인하를 통한 자본소득 과세 10% 인하의 동태적 귀착효과(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수중립 유지)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에 있어 유의미한 동태적 효율개선(dynamic efficiency gains)을 가져오고 또한 세대간 재분배(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효과와 동시에 동일세대내의 계층별 재분배(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에서의 중장기 세계개혁은 경제의 전반적 효율 향상을 통하여 대다수 경제주체들의 생애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인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동일

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단기귀착의 그것과는 달리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본과세가 아니라 노동과세의 세부담 인하를 통한 세제개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기적 균형에 이르는 동태적 조정과정에서의 세부담 변화의 전가가 노동요소 공급탄력성에 의존하는 효과가 미약하므로 이러한 방향의 세제개편이 동일세대내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세제개편의 평생소득 계층별 추가부담 (자본과세 인하)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계층별 지니계수 변화, 자본과세 인하의 0.01~0.03% 대비 노동과세 인하는 0.01~0.06%).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세제개편의 방향 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정책시나리오별로 생애후생의 변화에 미치는 조세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우선 세대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균제상태에서 안정화되기 이전의 이행단계(transition periods)에서 발생하는 세대별 생애후생 변화에 대한 급격한 차이는 조세시스템 전반의 '효율비용 변화'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에 따른 '세대간 재분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 우선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종 세제개편 시나리오의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비교할 때 이러한 세대간의 조정 요인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제개편의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에 있어 이처럼 세대간의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동일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의 재분배효과를 평가할 때 일관된 분석틀 내에서 세대간 및 세대내 세부담 귀착효과를 동시에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소득포괄주의에 입각한 소득의 누진과세 정책은 연간소득기준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부담의 귀착을 안겨주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누진소득과세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별로 저축을 위한 소득인지 소비를 위한 소득

인지를 구분하지 않아 개인의 저축을 위한 소득에 더 많은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동태적 효율비용(dynamic efficiency cost)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와 같은 평률의 일반소비세제는 소득과세 대비 소비-저축간 중립적(saving-consumption neutral) 성격이 강하므로 적어도 생애기준의 세대간 형평성의 조정 측면 및 조세체계의 동태적 효율비용 축소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법인세 등 자본관련 소득세제의 완화 정책은 자본스톡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연간소득(annual income)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비록 동일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그 궁극적 귀착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정책이 가져오는 장단기 효과가 비교기준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은 정부의 세제개편 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단기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증진 가능성도 감안하는 정책입안자의 기본적 시각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세의 장기귀착 효과가 단기귀착 효과와 유의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세제개편이 경제의 전반적 동태적 효율성에 미치는 정도에 주로 의존하게 되므로, 이에 기준하여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우선적으로 어떠한 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법인세 경감에 따른 저축화될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 인하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계층별 노동의 한계생산성 상승을 유발하여 그 혜택이 결국 노동요소에도 충분히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요소공급이 비탄력적인 비교적 단기에 있어서는 여타 요소로의 세부담 전가가 용이하지 않은 반면, 보다 장기적인 생애기준적 관점에서는 시간에 따라 이러한 전가가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세제도의 중장기적 효율성 우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세 인하의 동태적 귀착효과(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수중립 유지)는 연간기준의 관점이 아니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경우, 세부담의 변화에 따른 세대간 재분배 효과와 동일세대내 계층별 재분배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법인세제와 같은 자본과세로부터 소비과세로 세원을 점차로 이동하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경제 전반의 동태적 효율향상을 통하여 대다수 경제주체의 생애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자본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부담 이동의 방향은 노동과세의 인하를 통한 경우와 대비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애기준적 관점의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동시에 세제개선을 통한 경제 전반적 효율성 향상 및 중장기 성장동력의 지속적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향후 조세개혁의 근본 방향은 현행 법인세제 등 자본소득과세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제나 외부성 교정의 환경세제와 같은 소비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경제적 세부담 구조를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CGE모형의 분류 및 본 연구의 특징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II. 분석모형의 이론적 배경

1. 일반균형모형의 구성
2. 생산기술구조의 내생화
3. 소비지출구조의 내생화

III. ECGE모형의 구조

1. 분석모형의 개요
2. 분석모형의 구조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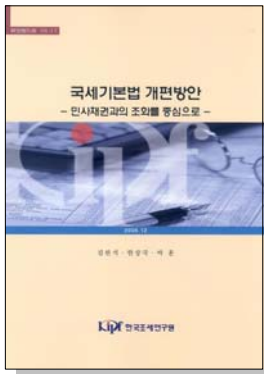
IV. 정책개편의 모의실험

1. 조세귀착의 이론적 기초
2. 유형별 귀착효과 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 김완석 · 한상국 · 박 훈
◆ 2006. 12

세법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할 때 납세자가 재산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자의 조세와 관련된 규범이 되는 세법을 통일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 법령의 체계나 구성을 바꾸는 형식적 측면의 개편과 함께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세목 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용적 측면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약 86여개의 조문을 갖고 있는 국세기본법은 다양한 국세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쟁점들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조화를 국세기본법의 개편방향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는 금전적 부담이기는 하지만, 납세의무의 확정을 국민에게 맡기고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는 과세관청과 보다 대등한 관계가 부여되고 있다.

이렇듯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대등하게 보아야 하는 흐름을 인정한다면, 조

세채권이 민사채권과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여러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등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37조의 제2차납세의무제도, 국세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결국 본 보고서에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를 재검토하면서 국세기본법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개편방안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기일 중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바꾸어야 한다. 납세증명서 개선을 통해 담보권자가 담보물권 설정시 조세채권의 유무 및 액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둘째, 당해세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당해세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셋째, 확정 전 압류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있더라도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개정이 된다면 납부기한)로 보고 그 이전 압류등기 또는 등록은 가압류 정도의 효력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담보재산 양도시 우선순위를 개선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된 담보재산의 환가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중에서 그 재산이 양도되지 않았다면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았을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이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경우 정수순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한도액의 개선, 개별 세법상의 중복적인 규정의 삭제 등을 개편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섯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축소,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사업에 관한 국세 세목의 명료화와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여덟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납세의무, 실질소득자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압류한 재산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열 번째,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야 한다.

열한 번째, 민법상 연대채무를 준용하는 방식의 법체계를 탈피하여, 세법상 독자적인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경우에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열두 번째, 세법상 독자적인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 현재 혼용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세 번째, 연부연납제도로 인해서 상속·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개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2. 차별성

제2장 국세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체제

제1절 국세기본법의 법적 성격

1. 세법의 기본법으로서 지위
2. 내국세 실체법 및 구제법의 기본법으로서 지위
3. 민법과의 관계

제2절 국세기본법의 체제

1. 국세기본법의 연혁
2. 현행 국세기본법 체제에 대한 평가

제3장 국세우선의 원칙에 관한 규정의 개편방안

제1절 현행제도

1. 국세우선의 원칙의 의의
2.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3. 당해세와 피담보채권
4. 조세채권과 임차보증금·임금채권

제2절 외국의 국세우선의 원칙

1. 독 일
 2. 일 본
 3. 미 국
-

제3절 국세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1. 성실한 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불안
2. 납세자의 담보제도 이용 제한
3. 담보재산 양도시 우선순위의 부당성과 불명확

제4절 국세우선의 원칙의 개선방안

1. 납세증명서제도의 보완
2. 법정기일의 변경
3. 당해세의 인정범위 축소
4. 확정 전 압류의 소급효 제한
5. 담보재산 양도시 우선순위 개선

제4장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개편방안

제1절 현행제도의 개관

1. 제2차납세의무와 법적 정당성의 문제
2. 제2차납세의무의 성격
3.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 제2차납세의무의 유형

제2절 외국의 제2차납세의무제도

1. 독 일
2. 일 본
3. 미 국

제3절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3.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4. 제2차납세의무규정의 미비에 따른 징수상의 애로
-

5.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의 매각순서의 미비
6.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미비

제4절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개선방안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개선방안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개선방안
3.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개선방안
4.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확충
5.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 환가절차의 개선
6.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명료화

제5장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개편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연대납세의무제도

1. 개 관
2. 우리 세법상 연대납세의무

제2절 외국의 연대납세의무제도

1. 일 본
2. 독 일
3. 오스트리아
4. 시사점

제3절 연대납세의무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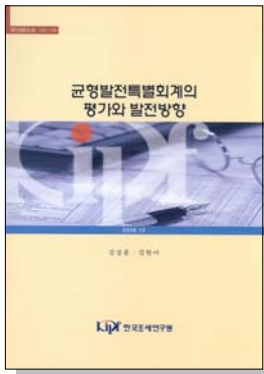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법률용어의 혼용에 대한 문제점
3. 소유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

제4절 연대납세의무의 개선방안

1.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2. 법률용어의 혼용에 대한 개선방안
3. 소유권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제6장 결어 :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 김정훈 · 김현아

◆ 2006. 12

균특회계는 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균특회계 대상사업들은 그 성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분포나 성격 측면에서 국고보조금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균특회계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특히 국고보조금과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

균특회계가 국고보조금과 차별화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별화 방안은 균특회계를 진정한 의미의 포괄보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균특회계 재원이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사업범위 내에서 잘 쓰였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들을 몇 개의 중분류 사업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방향이 포괄보조금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균특회계 대상사업들을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균특회계 대상사업들이 과연 중분류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유형별로 다른 균특회계 사업들이 지자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여, 대체성(fungibility)을 파악하였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균특회계 대상사업들 중 단년도에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제외하는 경우, 부처별로 사업성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처럼 하나의 배분공식으로 여러 부처의 이질적인 사업들을 포괄화하는 것은 향후 균특회계를 진정한 의미의 포괄보조금으로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균특회계 사업들 내에서 동질적인 사업들을 중분류하고, 각각의 중분류 사업에 해당하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이 균특회계를 국고보조금과 좀 더 차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균특회계 사업들을 중분류 사업으로 묶는다면, 가장 간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부처별로 사업을 묶는 것이다. 즉, 균특회계 대상사업은 건교부, 문광부, 행자부 등 부처별로 사업 내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동질성 검증을 거쳐서 부처별로 균특회계 사업을 중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처 사업 내에서도 사업 수가 많고, 또한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하나의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여전히 이질성의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균특회계 사업들의 동질성 파악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일단 사업들을 묶고, 부처별 사업 내에서의 동질성을 이차적으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대책사업과 같은 특수한 사업은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데, 국가적 중요도 측면에서 다른 사업들과 구분되고, 또한 특정 부처 사업으로 분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은 균특회계가 진정한 의미의 포괄보조금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석자료의 한계가 크고, 계량모형 역시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결과가 그대로 정책에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계량적 분석이나 통계적 분석은 향후 다양한 균특회계 사업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목 차

I. 서 론

II. 균특회계 현황

1. 제도적 현황
2. 이전재원의 비교분석
3. 균특회계의 개선과제

III. 국고보조금의 통합보조금 전환 사례 : CDBG

1. CDBG의 도입배경 및 개요
2. CDBG 프로그램 내용
3. CDBG의 배분공식 및 배분규모 결정방식
4. 배분공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5. CDBG 보조금 평가
6.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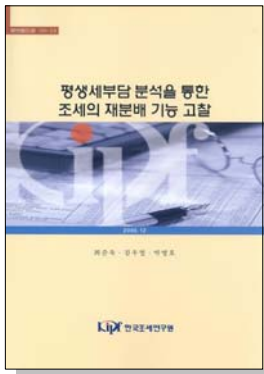
IV. 균특회계의 실증분석

1. 균특회계 사업의 대체성 분석
2. 균특회계 사업의 동질성 검증

V.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평생세부담 분석을 통한 조세의 재분배 기능 고찰

◆ 최준욱 · 김우철 · 박명호

◆ 2006. 12

조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한 시점, 특히 연단위의 세 부담 분석에 국한되고, 이와 관련된 정책 논의 역시 한 시점에서의 세 부담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세 부담 분석에만 기초하여 조세의 형평성이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각 개인은 한 연도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며, 평생 동안의 세 부담의 개인별 분포는 한 시점에서의 세 부담의 개인별 분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때로는 한 시점에서 보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세구조도 평생세 부담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세 부담 측면에서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이론적·실증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평생소득의 분포는 한 시점에서의 소득분포와 차이를 보이며, 평생세 부담 측면에서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는 한 시점에서의 재분배 효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소득이 생애시점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다. (1) 개인별 근로기간의 차이 (2) 생애경로에서의 소득의 구조적 변화 (life cycle earnings pattern) (3)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성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이 한 시점의 소

득의 개인별 차이를 평생소득의 개인별 차이보다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각 요인이 한 시점에서의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평생세부담의 재분배 효과보다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중 개인별 근로기간의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중요한 요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생애경로에서의 소득의 구조적 변화(life cycle earnings pattern) 및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성은 한 시점에서의 소득분포의 개인별 차이를 평생소득 분포의 개인별 차이보다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이러한 두 요인의 효과를 감안하면, 평생세부담 측면에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는 한 시점에서의 조세의 재분배 효과보다 상당히 작아진다. 전자의 요인의 영향을 감안하면, 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 중 일정 부분은 평생소득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 간의 재분배가 아니라, 각 개인의 생애시점별로 세부담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 중 일정 부분은 평생소득에 차이가 있는 개인들 간에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생애시점별 세부담 차등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의 일시적 변동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변동성이 없는 모형과 소득의 변동성이 있는 모형의 두 개의 모형을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그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의 한 시점에서의 소득분포의 차이와 평생소득 분포의 차이, 그리고 한 시점에서의 조세의 재분배 효과와 평생세부담 측면에서의 조세의 재분배 효과의 차이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간소득에 기초하여 누진적인 세율로 부과되는 소득세 구조가 수평적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물론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가지는 장점도 부정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비록 한 시점에서 고찰하는 것보다 재분배 효과가 작다고는 하더라도, 소득세가 평생소득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연간소득에 기초한 누진적인 소득세가 개인의 소비평활화를 도와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반면, 누진적인 소득세, 특히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연간소득에 기초하여 누진적인 세율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다른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비세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많은 왜곡을 초래하는데, 세율이 누진적일수록 그러한 부작용은 더욱 커진다. 뿐만 아니라 평생세부담 시각에서 보면, 제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평적 형평성이 위배되거나 한 시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추가적인 왜곡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왜곡효과 중 일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극복이 가능하다. 한 개인의 평생 동안의 소득을 추적하여 과세를 하는 평생소득 기초 과세방식(lifetime tax account)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세와 누진적인 소득세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즉, 조세체계의 선택은 재분배와 효율성 간의 선택이라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분배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둔다면 다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연간소득에 기초한 누진적인 소득세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고, 효율성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둔다면 소비세가 타당한 선택이 될 것이다. 현실에서의 합리적인 조세체계는 소비세와 누진적인 소득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판단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는 각 시점에서 나타나는 왜곡 외에도 평생세부담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득세의 평생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 시점에서 본 것처럼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률세 형태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크게 타당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정률소득세가 급여세(payroll tax) 형태로 근로소득이라는 제한된 세원에만 부과된다면, 그로 인한 왜곡효과는 훨씬 커진다. 물론 급여세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낮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연금 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 단계까지의 분석에만 기초하여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명확한 제안을 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목 차

I. 서 론

II. 문제의 제기 및 이론적 분석

1. 문제의 제기
2. 개인별 근로기간의 차이와 세 부담
3. 연령별 소득의 차이와 세 부담
4. 소득의 변동성과 세 부담

III.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1. 분석자료
2. 소득순위 불변 모형
3. 소득순위 변동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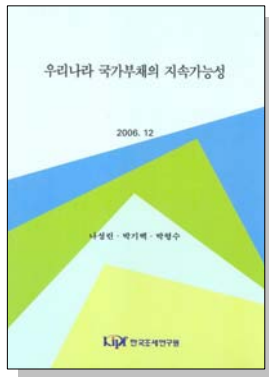
IV. 소득세의 장단점과 조세체계의 선택

1. 연간소득 기준 누진소득세의 문제점
2. 조세와 소비평활화
3. 조세체계의 선택 관련 논의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기타보고서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 ◆ 나성린 · 박기백 · 박형수
- ◆ 2006. 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양한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국가부채의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소개한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우려를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검증결과들이 국가부채 수준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줌에 따라 본격적인 재정건전화와 국가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미국, 영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국가부채 수준을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장기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 아직 국가부채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Bohn's test, Tax Gap test, IGDC(국제국가부채비교) 지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해보았다. 첫째, Bohn's test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증가할 경우 정부가 이전보다 기초 재정수지를 개선하면 재정의 유지가능성이 확보됨을 보여주는 검증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 방법을 세 가지 자료와 두 가지 모형에 적용하였다. 먼저 자료는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data 1), 국민연금기금 흑자, 외국환평형채권을 제외하고 정부 상환 공적자금부채를 추가한 조정 자료(data 2), 순융자를 제외한

조정 자료(data 3)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은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Benchmark 모형의 경우와 재정운영의 근본적 변화(1982 더미)와 외환위기까지 포함한(1983~1997 더미) 구조변화 모형,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Bohn's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nchmark 모형의 경우 세 가지 자료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조정 모형의 경우, data 1을 사용한 모형은 1982더미를 사용한 경우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data 2를 사용한 모형은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data 3을 사용한 모형 또한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치적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ax Gap test는 향후 재정지출 전망치에 기초하여 현재 및 미래의 재정정책 기조가 국가채무의 누적을 야기하는 지를 점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수준을 나타내는 지속가능한 세율(t^*)과 현재의 세입수준을 나타내는 현재의 세율(t)와의 차이로 정의되는 tax gap을 계산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이 경우 tax gap인 t^*-t 가 음수이면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게 된다. Tax Gap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기(1년)와 중기(5년)적으로는 우리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하나, 장기(40년 및 66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GDC지수는 국가부채의 실적치와 그 나라의 사회·경제·인구구조·재정·정치변수를 고려한 예상치를 비교하여 그 나라의 국가부채의 규모가 과도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실적치가 예상치 보다 크면 그 나라의 국가부채는 그 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큼을 의미한다. IGDC 지수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과도하게 컸으나 그 이후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이후 아직 예상치 보다는 낮지만 다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국민

연금의 잠재부채,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국가부채 왜 문제인가

1. 국가부채의 개념
2. 국가부채의 문제점

III.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추이 및 현황

1. 국가부채 유형
2. 국가부채 추이
3. 광의의 국가부채
4. 향후 국가부채 증가 전망

IV. 외국의 국가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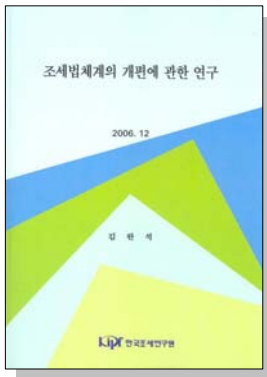
1. 외국의 국가부채 추이
2. 외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
3. 외국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V.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적정수준

1. Bohn's Test
2. tax gap 검증
3. IGDC지수(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s Index)

VI. 결 론

참고문헌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 ◆ 김 완 석
- ◆ 2006. 12

I.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 필요성

현행 세법은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한다. 세법은 납세의무자는 물론이고 과세관청을 위해서도 알기 쉽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준다. 세금은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조세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며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명확성 및 공평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석을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II.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방안

세법은 그 실체적 내용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세법의 형식 및 체제의 잘못이나 표현의 어려움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세법은 과세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필요성,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의 역할 증대, 경제의 성장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거래의 출현, 세법의 기술성 등과 같은 세법의 내용 그 자체 또는 실체적인 조세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어렵다. 이와 같은 세법의 실체적 내용에서 기인하는 세법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으로서는 세목을 대폭 줄이면서 flat tax와 같은 단순한 세금을 만드는 방안과 현행의 세금제도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세요건 및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세액계산의 특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단순하게 고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법의 형식 및 체제의 잘못이나 어려운 표현을 쓰는 데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세법체계의 복잡성과 규정의 중복성, 법령의 통일성 및 법령체계의 일관성 결여, 세법편제의 난잡성, 법문 및 표현의 애매성과 난해성, 법문의 지나친 추약성과 추상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법의 형식 및 체제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세법의 체계·편제 및 표현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의 세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다만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방안 중 세법의 형식 및 체제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법의 형식 및 체제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세법이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현재 20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을 미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과 같은 단일 법률체계, 또는

프랑스의 조세실체법 및 조세절차법과 같은 2개의 법률체계로 통합하도록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독일의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과 같은 단일의 조세통칙법으로 통합·제정하고, 성격이 유사한 개별세법을 통폐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별세법에서 제각기 규정하고 있는 중복적인 규정(예: 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국세통칙법에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둘째, 국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한다.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내국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 간의 통일성 및 내국세법령 안에서의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유지하고, 각 법령 간의 용어를 통일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서 정의규정을 확대 규정하여 세법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세법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조세법의 편제기준을 정립하고 그 정립된 편제기준에 따라 조세법령을 다시 편제한다. 이와 함께 항구적이고 간결한 조항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법률 조항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법문의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불확정개념의 도입을 지양하도록 한다. 압납·장닉·탈루·훼손·첩용·증빙·취집·신립·사료 등과 같은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고쳐 쓰고,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예외의 예외규정을 지양하고, 준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재준용을 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령의 인용방법을 개선하여 이해도를 높이며, 본칙에서 규정할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음으로 법문을 문장의 형태와 어법·어순 등에 맞추어 고치도록 한다. 또한 긴 조문은 분리하여 2개 이상의 조문으로 나누고, 장문은 2개 이상의 항·호 또는 목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거나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나누어야 한다.

다섯째, 내용은 방대하지만 상세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한 세법으로 개편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미국 연방세법의 시행령과 같이 예시규정이

나 사례(examples)를 많이 두도록 한다. 또한 세법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령에 개관규정, 산식, 표 및 흐름도 등을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방세조례에의 위임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에서의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알기 쉬운 세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식 및 체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법의 내용 및 실제적인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방만하고 많은 세목을 통합함과 아울러 목적세를 일반세로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Ⅲ.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프로그램의 추진

세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세법 개편을 전담할 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아래 장기적인 과제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세법의 개편작업은 세법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세법을 알기 쉽게 다시 고쳐 써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입안 공무원·세무공무원·조세법학자·재정학자·세무회계를 전공하는 학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국어학자를 망라하는 방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상설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설기구와는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법의 개편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법의 개편작업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많은 전문 인

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법의 개편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중단 없이 꾸준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꾸준히 세법 다시 고쳐 쓰기 과제를 수행하여 온 영국의 ‘세법 다시 고쳐 쓰기 프로젝트(Tax Law Rewrite Project: TLRP)’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세법개혁프로그램(Tax Law Improvement Program: TLIP)’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목 차

제1장 서 론

- I. 연구목적
- II. 연구방법
- III. 연구의 범위

제2장 조세법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조세법체계의 현황

- I. 조세법체계의 개선 필요성
 1. 조세법의 복잡성과 난해성
 2. 조세법체계의 개선 필요성
- II. 우리나라의 조세법체계의 현황
 1. 내국세법체계의 현황
 2. 관세법체계의 현황
 3. 지방세법체계의 현황
- III. 주요 외국의 조세법체계의 현황
 1. 미 국
 2. 독 일

3. 프랑스
4. 영 국
5. 일 본

제3장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 I.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1. 조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내용
 2. 조세법체계 개편작업의 평가
- II. 주요 외국에서의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1. 영 국
 2. 오스트레일리아
 3. 미 국

제4장 현행 조세법체계의 문제점

- I. 1세목 1세법 체계의 유지에 따른 규정의 중복성과 복잡성
 1. 1세목 1세법 체계의 유지에 따른 복잡성
 2. 유사한 세목 간의 규정의 중복
 3. 법령 간 규정의 중복
 4.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과의 구획의 혼란
- II. 법령 간의 통일성 및 법령체계의 일관성 결여
 1. 상하법령 간의 모순과 체계정당성의 원칙의 위반
 2. 조세법의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의 결여
 3. 조세법령 상호 간의 통일성의 결여
 4. 위임입법의 한계 이탈
- III. 조세법의 법령편제의 난잡성
 1. 조세법 편제를 위한 기준의 미흡
 2. 조세법의 편제순서에 관한 기준의 부재
 3. 조항의 잦은 변동에 따른 안정성의 결여
 4.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의 연결성의 미흡

IV. 법문 및 표현의 애매성과 난해성

1. 표현의 애매성
2. 법문의 난해성
3. 긴 조문과 법문의 長文性에 따른 해석의 어려움

V. 법문의 지나친 축약성과 추상성

VI. 지방세법체계상의 문제점

1.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의 불명확성
2.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불명확성

VII. 체계적인 조세법 정비계획의 부재

제5장 조세법체계의 개편방안

I. 조세법의 통합과 중복적 규정의 개선

1. 조세법의 통합
2. 조세법령 간 중복규정의 통합

II. 법령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유지

1. 법령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유지
2.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의 유지
3. 내국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 간 통일성의 유지
4. 내국세법령 안에서의 통일성의 유지
5.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III. 조세법편제의 개선

1. 조세법편제의 개편기준 정립
2. 조항의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의 개선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법률조항과의 일치

IV. 알기 쉬운 세법으로의 개편

1.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 확보
 2.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기
 3. 긴 조문의 분리와 장문의 단문화
-

V. 내용이 상세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한 세법으로의 개편

1. 방대하지만 의미가 분명한 세법으로의 개편
2. 시행령에서의 예시규정 및 사례의 도입
3. 개관규정의 도입
4. 산식의 확대
5. 표 및 흐름도 등의 활용

VI. 지방세법체계의 개선

1. 지방세법과 조례와의 관계의 명확화
2.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명확화

VII.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작업의 추진

1.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작업의 필요성
2.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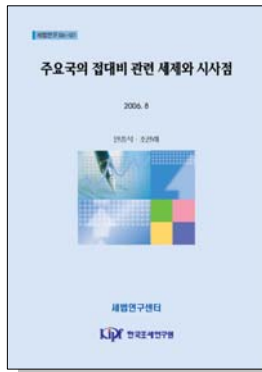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영국의 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의
 편제

〈부록 2〉 오스트레일리아의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세 법 연 구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 ◆ 안중석 · 조찬래
- ◆ 2006. 8.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세제 현황 및 문제점

III. 주요 외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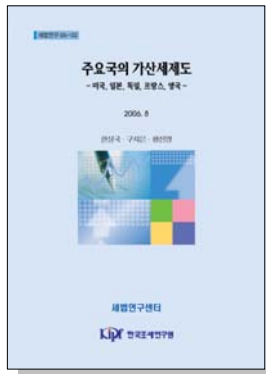
- | | |
|---------|--------|
| 1. 미 국 | 2. 일 본 |
| 3. 영 국 | 4. 독 일 |
| 5. 뉴질랜드 | |

IV. 각국의 접대비 제도 비교

V.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 기본통칙상의 접대비 및 기타 유사비용과의 구별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 ◆ 한상국 · 구자은 · 황진영
- ◆ 2006. 8.

I. 서론

II.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가산세제도의 현황
2. 문제점

III.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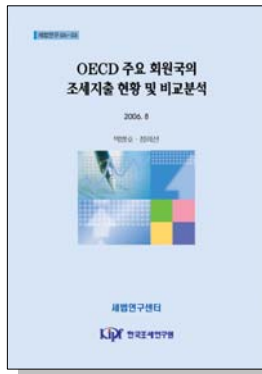
- | | |
|--------|---------------------|
| 1. 미 국 | 2. 일 본 |
| 3. 독 일 | 4. 프랑스 |
| 5. 영 국 | 6. 시사점-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

IV.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주요국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미국, 일본, 독일)

1. 미국의 가산세 관련 법조문(Internal Revenue Code, IRC)
2. 일본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國稅通則法)
3. 독일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Abgabenordnung, AO)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 ◆ 박명호 · 정희선
- ◆ 2006. 8.

I. 서 론

II. 조세지출의 개념과 측정방법

1. 조세지출의 개념
2. 조세지출의 측정방법

III. OECD 주요국의 조세지출 최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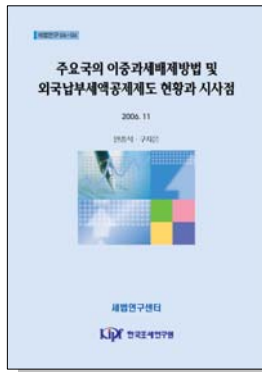
- | | |
|--------|--------|
| 1. 호 주 | 2. 캐나다 |
| 3. 독 일 | 4. 영 국 |
| 5. 미 국 | 6. 일 본 |

IV. 조세지출의 국가간 비교

1.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규모
2. 주요 항목의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
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
4. 정 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 ◆ 안종석 · 구자은
- ◆ 2006. 11.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배제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III.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시사점

1. 이중과세배제방법의 특징
2.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3. 요약 및 시사점

IV. 주요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시사점

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2. 공제 가능한 외국세액 및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3. 공제시기
4.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V.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요

- | | |
|--------|--------|
| 1. 미 국 | 2. 일 본 |
| 3. 영 국 | 4. 독 일 |
| 5. 프랑스 | 6. 캐나다 |
| 7. 호 주 | |

〈부록 2〉 외국법인세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예시(일본)

〈부록 3〉 경제적 실질검사의 개념 및 예시(IRS Notice 98-5)

- | | |
|--------|--------|
| 1. 개 념 | 2. 예 시 |
|--------|--------|

〈부록 4〉 이중과세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외국세액의 목록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 ◆ 안경봉 · 정희선
- ◆ 2006. 11.

I. 서 론

II. 현행 소득세법상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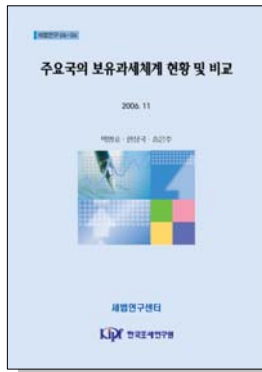
III. 외국의 입법례 -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 | |
|--------|--------|
| 1. 미 국 | 2. 캐나다 |
| 3. 영 국 | 4. 일 본 |
| 5. 정 리 | |

IV.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방안

1.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조합
2. 유형별 검토
3. 각 유형별 세액효과

V. 결 론



주요국의 보유과세체계 현황 및 비교

- ◆ 박명호 · 한상국 · 송은주
- ◆ 2006. 11.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1. 개 요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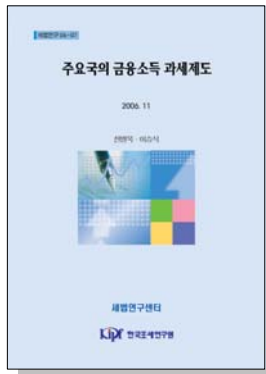
III. 주요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독 일
5. 대 만

IV. 주요국의 보유세제 비교

V. 결 론

참고문헌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 전병목 · 이승식
- ◆ 2006. 11.

I. 서론

II.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관

III. 미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미국의 소득세 제도 개관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자본이득
5. 증권거래세

IV. 영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영국의 소득세 제도 개관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자본이득
5. 증권거래세

V. 독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독일의 소득세 제도 개관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자본이득
5. 증권거래세

VI. 일본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일본의 소득세 제도 개관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자본이득(주식 양도차익)

VII. 핀란드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핀란드의 소득세 제도 개관
2.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V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 ◆ 전병목 · 조찬래
- ◆ 2006. 11.

I. 배 경

II. 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 | | |
|---------|--------|
| 1. 미 국 | 2. 영 국 |
| 3. 캐나다 | 4. 호 주 |
| 5. 뉴질랜드 | 6. 독 일 |
| 7. 이탈리아 | |

III.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기타 국가들의 자녀세액공제제도

- | | |
|----------|----------|
| 1. 오스트리아 | 2. 아일랜드 |
| 3. 스페인 | 4. 포르투갈 |
| 5. 노르웨이 | 6. 슬로바키아 |
| 7. 헝가리 | |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 ◆ 한상국 · 안경봉 · 마정화
- ◆ 2007. 11.

I. 서론

II. 체납조세 징수제도

1. 우리나라의 체납액 현황
2. 징수와 체납처분

III. 경매와 공매의 비교

1. 경매와 공매의 개념
2. 경매와 공매의 절차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IV. 현행 체납처분제도의 문제점

1. 배분대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2. 공매통지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3. 배분요구의 종기 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
4. 교부청구 규정 및 배분잔액 귀속 규정에 대한 문제점
5.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의 경합에 따른 문제점

V. 개선 방안

1. 배분대상채권의 범위 확대
2. 공매통지 대상자의 범위 확대
3. 배분요구의 종기 규정 신설
4. 교부청구 규정 및 배분잔액 귀속 규정의 개선
5.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의 경합시 조정 절차 마련

참고문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전병목 · 김태훈 · 문예영
◆ 2007. 11.

I. 서론

II. 우리나라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현황

1. 간접투자제도
2. 간접투자기구 과세이론
3. 간접투자기구의 소득구분
4. 투자자의 과세제도
5.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III.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

1. 영국
2. 미 국
3. 일 본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와 관련된 국제조세 제도

1. 한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2. 영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3. 미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4. 일본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V.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입법례

1. 직접투자와의 조세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점
2.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에 관련된 문제점

VI. 시사점

1.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의 구분
2. 투자손실을 반영한 과세소득인정
3. 도관 또는 실체에 대한 구분

참고문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 박명호 · 문예영

◆ 2007. 11.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주세 및 주류행정체계

1.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
2.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체계

III. OECD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

1. OECD 국가의 주세율 체계
2. OECD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제도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주류제조의 시설기준
2. 주류판매면허제도 연혁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 ◆ 김진수 · 송은주 · 마정화
- ◆ 2007. 11.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의 범위
3.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III.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 | | |
|--------|--------|
| 1. 미 국 | 2. 영 국 |
| 3. 일 본 | 4. 대 만 |

IV.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1.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3. 조세지원 단계별 중소기업의 범위

참 고 문 헌

부록: 각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I. 우리나라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II. 미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III. 영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IV. 일본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V. 대만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 ◆ 손원익 · 김정아 · 송은주
- ◆ 2007. 11.

I. 서론

II. 기부금 지출 현황

1. 미국의 기부금 현황
2. 영국의 기부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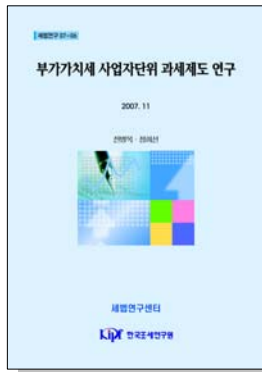
III.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 | | |
|--------|--------|
| 1. 미 국 | 2. 영 국 |
| 3. 일 본 | 4. 프랑스 |
| 5. 독 일 | 6. 대 만 |

IV.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비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연구

- ◆ 전병목 · 정희선
- ◆ 2007. 11.

I. 서 론

II.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현황 및 문제점

1.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관련 입법 현황
2. 사업장단위 과세제도의 문제점

III.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사례

1. EU 일반지침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 본
6. 소 결

IV.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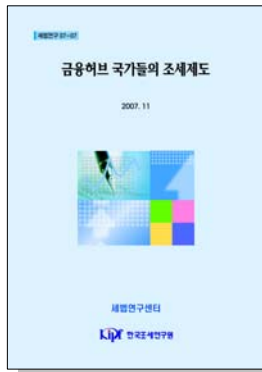
1.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기대효과
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3. 소 결

V.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1.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
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시 고려사항

VI. 결 론

참고문헌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 ◆ 전병목 · 정희선 · 조진권 ·
기은선 · 박임수
- ◆ 2007. 11.

I. 서론

II. 아일랜드

1.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현황
2. 소득과세제도
3. 국제투자소득 과세제도
4. 시사점

III. 두바이(Dubai)

1. 금융부문(Financial Sector) 현황
2. 소득과세제도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시사점

IV. 싱가포르

1. 금융부문 현황
2. 소득과세제도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4. 시사점

V. 홍콩

1. 금융부분 현황
2. 소득관련 조세제도
3.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 ◆ 성명재 · 박임수
- ◆ 2007. 11.

I. 서론

II.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 | | | |
|---------|--------|--------|
| 1. 한 국 | 2. 미 국 | 3. 영 국 |
| 4. 캐나 다 | 5. 일 본 | 6. 대 만 |
| 7. 홍콩 | 8. 중 국 | |

III. 각국의 주요 개별소비세 품목 비교

1. 주세의 국제비교
2. 담배세의 국제비교
3. 석유류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4. 자동차 취득단계 세금의 국제비교

IV. 요약

1.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2. OECD 국가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비교

참고문헌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 ◆ 정재호 · 김태훈
- ◆ 2007. 11.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관세담보제도

- | | |
|------------|--------------------|
| 1. 개관 | 2. 담보제공사유 |
| 3. 담보제공자 | 4. 담보제공 |
| 5. 담보물의 종류 | 6. 담보제공 사유별 담보액 평가 |
| 7. 담보의 변경 | 8. 담보의 종료 |

III.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 | | |
|-------|-------|
| 1. EU | 2. 일본 |
| 3. 미국 | 4. 호주 |
| 5. 영국 | |

IV. 시사점

참고문헌

재 정 포 럼



2006년 1월호 (통권 제115호)

1. 권두칼럼

2006년의 한국경제와 조세·재정정책 / 최용선

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 4) 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 5) 2006년 경제운용방향

2. 현안분석

- 1)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 김중면
- 2)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 정재호

5. 재정통계

지방재정 I 편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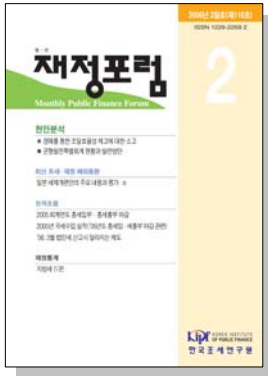
중국, 개인소득세 변경 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양극화, 정치선전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외

4. 정책흐름

- 1)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
- 2)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



2006년 2월호 (통권 제116호)

1. 권두칼럼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불명확성 / 김완석

관련 추가설명

3) 2005년 국세수입 실적('05년도 총
세입·세출부 마감 관련)

4) '06.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2. 현안분석

1) 경매를 통한 조달효율성 제고에
대한 소고 / 김 진

5)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2)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과 발전방
안 / 김현아

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7) 금년 정부 R&D투자 전년 대비
14.2% 증가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외

5. 재정통계

지방세 IV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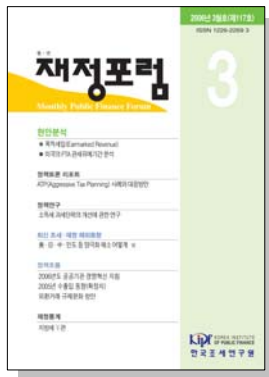
4. 정책흐름

1) 2005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
부 마감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자영업자 과세기반 확대 실효 거들까
외

2) 2005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06년 3월호 (통권 제117호)

1. 권두칼럼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 이준구

2. 현안분석

- 1) 목적세입(Earmarked Revenue) / 박기백
- 2)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 정재호

3. 정책토론리포트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
와 대응방안

4. 정책연구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완석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日·中·인도 등 양극화 해소 어
떻게 외

6. 정책흐름

- 1)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 2) 2005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 3)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 4) 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

7. 재정통계

지방세 V편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외



2006년 4월호
(통권 제118호)

1. 권두칼럼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에 대한 대책
/ 김동건

2. 현안분석

- 1) 납세협력도 상승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성명재
- 2)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 류덕현

3. 해외동향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배경과 전망 / 김유찬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日 재무, 재정건전성 위한 소비세 도입 시사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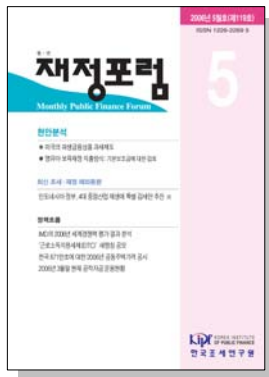
- 1)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 2) '05년말 국가채무 현황
- 3) 2005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결과
- 4) 2005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 5)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6. 재정통계

국제비교 I 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론스타 과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외



2006년 5월호 (통권 제119호)

1. 권두칼럼

조세비용의 관점에서 본 재정개혁 / 전주성

2. 현안분석

- 1)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 홍범교
- 2)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기본 보조금에 대한 검토 / 김현숙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인도네시아 정부, 4대 중점산업 재생에 특별 감세안 추진 외

4.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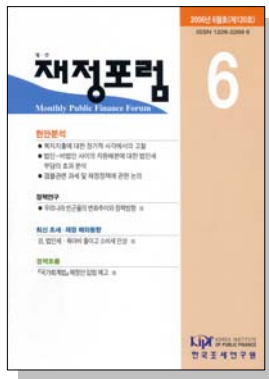
- 1)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2)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새명칭

공모

- 3) 전국 871만호에 대한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 4)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

5.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오도된 상속세 폐지론 외



2006년 6월호 (통권 제120호)

1. 권두칼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세 가지 오해 / 송대희

2. 현안분석

- 1)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고찰 / 최준욱
- 2) 법인-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효과 분석 / 민희철
- 3) gambling 관련 과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 / 김현아

3. 정책연구

- 1)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성명재
- 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박기백·김현아
- 3)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원종학·김종면·김형준

- 4)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 홍범교
- 5)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 이진규·김진수

- 6)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 회피와 그 대응방안 / 노영훈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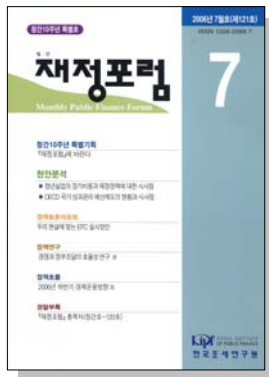
일, 법인세 육아비 줄이고 소비세 인상 외

5. 정책흐름

- 1) 부담금 운용평가단, 13개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 2)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 분석
- 3)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 4) '국가회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성공적 FTA의 조건 외



2006년 7월호 (통권 제121호)

1. 권두칼럼

결과중심의 예산사업 성과관리 / 최용선

2. 특별기획

재정포럼에 바란다 / 최 광 외

3. 현안분석

- 1)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 김종면
- 2) OECD 국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박노욱

4. 정책토론포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5. 정책연구

- 1)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 박상원·김 진
- 2) 조세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전병목·장용성

3)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 노영훈·김현숙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 전병목·안종석

5)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상국·박 훈

6.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경기 좋을 때 세금 더 걷는다 외

7. 정책흐름

- 1)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2)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 3) 200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 외



2006년 8월호 (통권 제122호)

1. 권두칼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조화 / 박완규

2. 현안분석

- 1) 적대적 M&A와 관련한 조세문제의 검토 / 김진수
- 2)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 류덕현

3. 정책토론포럼

- 1)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 2)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4. 정책연구

- 1)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 김우철
- 2) 재정지출의 분야별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 최준욱·류덕현·박형수
- 3)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 특례에 대한 연구 / 안중석·권오성

4)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 정재호·이명현

5)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박노욱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페루 FTA, 미 의회 승인만 남아 외

6. 정책흐름

-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담 경감
- 2) 2006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대폭 증가
- 3) 2006년 2/4분기 실질 GDP(속보치) 평가
- 4)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인터넷 조회만으로 간단히

7. 재정통계

OECD국가의 총조세수입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비과세 감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외



2006년 9월호 (통권 제123호)

1. 권두칼럼

글로벌 임밸런스하의 재정운영 /
김준영

2. 현안분석

- 1) 조세 이전소득의 분포 / 성명재
- 2)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김우철
-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 이기영

3. 특별기획

〈2006년 세제개편안〉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중점
/ 김낙희
〈2006년 세제개편안〉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 / 박정수
〈2006년 세제개편안〉 세원투명성 제

고의 계기로 삼아야 / 전병목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세계 6대 조세피난처의 엇갈리는 명
암 외

5. 정책흐름

- 1) 2006년 세제개편(안)
- 2)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7.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제개편안 배경과 국세행정의 합리
화 외



2006년 10월호 (통권 제124호)

1. 권두칼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 구정모

2. 연안분석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 김승래
- 2)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박명호

3. 특집 · 2007년 예산(안)

- 1) 2007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 노형욱
- 2)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I) / 임주영
- 3)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II) / 박형수

4. 기고

제3차 OECD 국제청장회의의 성과와

의미 / 이승재

5. 기획

200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 민희철

6. 해외동향

OECD의 『Revenue Statistics』(2006
년판) 발간

7.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주택경기 침체 美 G에 1% 낮출 것 외

8.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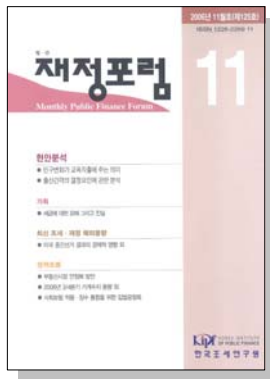
- 1) 2007년 예산(안) 주요내용
- 2)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

9. 재정통계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

10.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경제 위기관리 절실하다 외



2006년 11월호 (통권 제125호)

1. 권두칼럼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회계참여’제 도입 시급하다 / 임향순

2. 현안분석

- 1)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
/ 정재호
- 2)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민희철

3. 기획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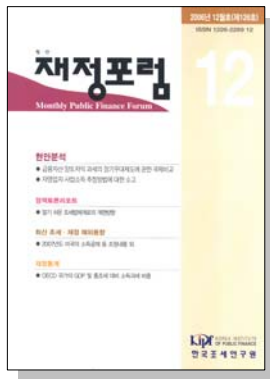
- 1)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 2)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외
- 3)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6.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미시적 처방에 쏠린 부동산 대책 외



2006년 12월호 (통권 제126호)

1. 권두칼럼

2만달러 문턱을 넘으려면 / 강응선

2. 현안분석

- 1)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장기우
대제도에 관한 국제비교 / 홍범교
- 2)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대
한 소고 / 김현숙

3. 정책토론회리포트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 김완석

4. 해외동향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제개편 건의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2007년도 미국의 소득공제 등 조정

내용 외

6.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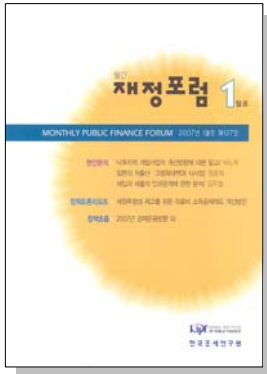
- 1)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내년 정책
방향 외
- 2) OECD, 경제전망 발표
- 3) 재정보전금제도 개선으로 시·군
간 재정 형평화 효과 제고

7.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및 총조세 대비
소득과세 비중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 민생예산 충분히 반영돼야 외



2007년 1월호 (통권 제127호)

1. 권두칼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
/ 최용선

2. 현안분석

-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 박노욱
- 2)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시사점 / 원중학
- 3)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 김우철

3. 정책토론포트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2007년 中 수출입관세율 어떻게 달

라지나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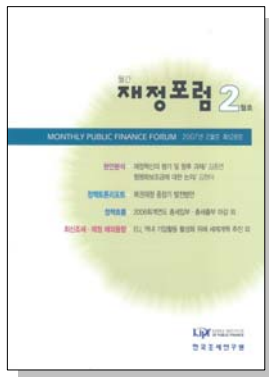
- 1) 2007년 경제운용방향
- 2)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 3)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 4) 건물기준시가

6.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2007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 외



2007년 2월호 (통권 제128호)

1. 권두칼럼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 유일호

2. 현안분석

- 1) 재정혁신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김중면
- 2) 형평화보조금에 대한 논의 / 김현아

3. 정책토론포럼

복권재정 중장기 발전방안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역내 기업활동 활성화 위해 세제개혁 추진 외

5. 정책흐름

- 1)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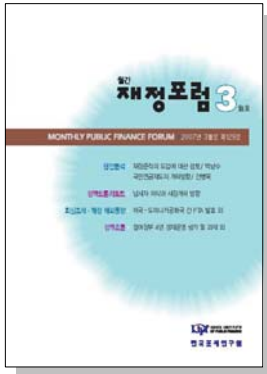
- 2) 2007년 세법 시행령 규칙(안)
- 3) '07년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
- 4) '06년 재정집행실적 예년에 비해 대폭 개선

6.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원천징수 재산과세 비중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정치권 결단해야 외



2007년 3월호 (통권 제129호)

1. 권두칼럼

공평한 조세부담이란? / 원윤희

2. 현안분석

1)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 박형수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 전병목

3. 정책토론포트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도미니카공화국 간 FTA 발효
외

5. 정책흐름

1)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2)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 보고

3)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경제
교류 전망

6.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조세피난처 더 이상 설 곳 없다 외



2007년 4월호 (통권 제130호)

1. 권두칼럼

예산과정과 예산정치 / 신해룡

2. 현안분석

- 1)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 김진수
- 2)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 성명재

3. 정책토론회리포트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4. 정책연구

- 1) 기업인수 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진수 · 이준규
- 2)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 김현숙 · 성명재
- 3)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박형수 · 류덕현

- 4)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 김완석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영국, 소득 법인세 2%p 인하 외

6. 정책흐름

- 1)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 2)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3)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7.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2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시장실패적 현상과 정부정책의 색깔 외



2007년 5월호 (통권 제131호)

1. 권두칼럼

재정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역할
/ 박태규

2. 현안분석

- 1) 주택시장 가격정책에 대한 소고/
노영훈
- 2)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
와 선택을 중심으로 / 김 진

3. 정책연구

- 1)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
화 연구 / 정재호 · 박순찬
- 2)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안중석 외
-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
방향 / 김정훈 · 김현아

4. 직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중국, 일본 기업에 이중과세 철회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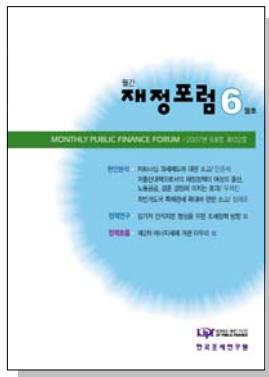
- 1) IMD의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2) 한-EU FTA 협상 개시 결정
- 3)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4)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 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금년
도 재산세 평균 5.3% 오른다

6. 재정통계

총재정규모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한·EU FTA의 성공전략 외



2007년 6월호 (통권 제132호)

1. 권두칼럼

조세문화의 창달 / 이만우

2. 현안분석

- 1)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 안중석
- 2)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 우석진
- 3)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 정재호

3. 정책연구

- 1)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 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안중석 · 홍범교
- 3)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 김승래

- 4)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김완석 · 한상국 · 박 훈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전가격 조작 등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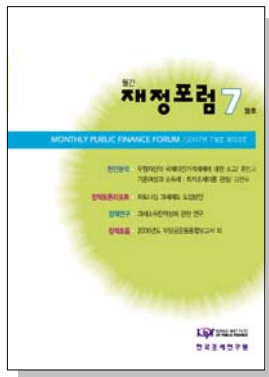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 3)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 4) OECD, 경제전망 발표

6. 재정통계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다 외



2007년 7월호 (통권 제133호)

1. 권두칼럼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 이인실

2. 현안분석

- 1)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소고 / 홍범교
- 2) 기혼여성과 소득세: 최적조세이론 관점 / 김현숙

3. 정책토론포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4. 해외동향

일본의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7」

5. 정책연구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6.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자소득세 폐지한다 외

7.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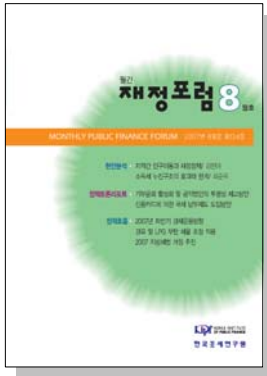
- 1)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3)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 5)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8. 재정통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외

9.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불투명한 NGO 회계 기부문화 죽인다 외



2007년 8월호
(통권 제134호)

1. 권두칼럼

개방과 국제환경의 변화 / 장근호

2)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3) 2007 지방세법 개정 추진

2. 현안분석

1) 지역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 김현아

2) 소득세 누진구조의 효과와 한계 / 최준욱

6. 재정통계

특별회계법 세입세출 결산액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령화의 '해법' 주택연금 외

3. 정책토론포트

1)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2)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클린 에너지법, 美 하원 통과 외

5. 정책흐름

1) 경유 및 LPG 부탄 세율 조정 적용



2007년 9월호 (통권 제135호)

1. 권두칼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재와 미래 / 김유찬

2. 현안분석

- 1)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 박노욱
- 2)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 결정 / 원종학

3. 특별기획

- 1) 2007년 세제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 김낙희
- 2)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 / 이철인
- 3)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I) / 전병목

4. 직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日, 소비세 1%p 인상 추진... 연금재원 확보 위해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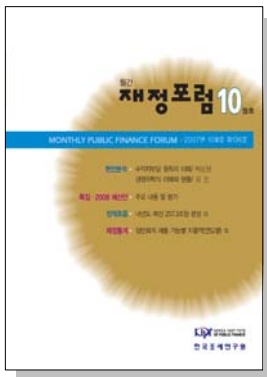
- 1) 2007년 세제개편(안)
- 2) 금년도 국세징수 실적 호조
- 3)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 방안

6. 재정통계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 효율 높일 계기다 외



2007년 10월호 (통권 제136호)

1. 권두칼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재정 / 김동건

2. 현안분석

- 1)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 박상원
- 2) 경쟁위탁(competitive sourcing)의 이해와 현황 / 김진

3. 특별기획

- 1)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투자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 김용호
- 2) 사회적 투자의 활성화를 실험하는 2008년 예산안 / 이원희
- 3)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 / 우석진

4.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재무부·상무부, 인터넷서비스 과

세 영구유예 요청 외

5. 정책흐름

- 1) 내년도 예산 257.3조원 편성
- 2)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도입 추진
- 3)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
- 4) '세금부담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니...
- 5)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 조사

6.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수익률 2%p 상승, 갈 길 먼 국민연금 외

국민연금금은 세금이 아니다 외

1993~2007

발간도서목록

연구총서

1. KTI 금융모형: 금융·거시 통합모형
최장봉·이인표/1995. 2/값 9,000원
2.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0,000원
3.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4.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5.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V)
최 광·임주영(편)/1997. 9/값 13,000원
6.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
임주영(편)/B5변형/365면/1998. 12/값 12,000원
7.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
임주영(편)/1998. 12/값 10,000원
8.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I)
임주영(편)/1998. 12/값 11,000원

연구보고서

- 93-01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손광락/1993. 9/값 5,100원
- 93-02 소비세 부담 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성명재/1993. 10/값 5,500원
- 93-03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명근/1993. 10/값 4,000원
- 93-04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윤건영·임주영/1993. 10/값 6,100원

- 93-05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이성욱·한상국·최명근/1993. 11/값 6,500원
- 93-06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김유찬/1993. 11/값 6,000원
- 93-07 금융선물거래의 도입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분석
최흥식·홍범교/1993. 12/값 7,000원
- 93-08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김진수/1993. 12/값 8,500원
- 93-09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나성린·현진권/1993. 12/값 6,500원
- 93-10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수/1993. 12/값 7,200원
- 93-11 대만의 환율운용과 수출경쟁력
김종만/1993. 12/값 6,000원
- 94-01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
최장봉/1994. 2/값 5,500원
- 94-02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률의 모색
김명숙/1994. 4/값 2,500원
- 94-03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김진수·안종석/1994. 5/값 4,500원
- 94-04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향
성명재·현진권/1994. 6/값 7,100원
- 94-05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세합리화 방안
최명근/1994. 7/값 7,000원
- 94-06 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현진권/1994. 10/값 9,500원
- 94-07 국세통칙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철승/1994. 11/값 6,000원
-

-
- 94-08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곽태원/1994. 12/값 4,500원
- 94-09 환율운동과 수출경쟁력
김종만/1994. 12/값 9,900원
- 94-10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편방안
김유찬/1994. 12/값 4,000원
- 94-11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안중범 외/1994. 12/값 9,000원
- 94-12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안중석/1994. 12/값 3,000원
- 95-01 담배소비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김진수·성명재·박정수·이성욱/1995. 2/값 11,000원
- 95-02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안중길/1995. 5/값 6,000원
- 95-03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1995. 12/값 7,000원
- 95-04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현진권/1995. 12/값 4,000원
- 95-05 세수추계모형과 세수전망
성명재/1995. 12/값 5,000원
- 95-06 재정정책 기초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이창용·조운제/1995. 12/값 3,000원
- 96-01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김종만/1996. 4/값 6,000원
- 96-02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박정수·안중석/1996. 4/값 7,000원
- 96-03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통금융의 현황 및 정책과제
이기영/1996. 5/값 5,000원
-

- 96-04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추정
현진권/1996. 8/값 5,500원
- 96-05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향
김종만/1996. 10/값 7,000원
- 96-06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상국·배준호·이광재/1996. 12/값 16,000원
- 96-07 기업의 차입과 세제
손원익/1996. 12/값 5,000원
- 96-08 한국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 KIPF96Q
박종규/1996. 12/값 5,500원
- 96-09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손원익 외/1996. 12/값 6,500원
- 96-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안종석·박정수/1996. 12/값 8,000원
- 96-11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유시권/1996. 12/값 6,500원
- 96-12 한국의 토지세제
노영훈·이성욱·이진순/1996. 12/값 6,000원
- 97-0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정수/1997. 3/값 6,000원
- 97-02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관계
김건우/1997. 3/값 4,000원
- 97-03 단위근 검정과 세수추계
성명재/1997. 3/값 6,000원
- 97-04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장 춘/1997. 3/값 11,000원
- 97-05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와 세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성명재/1997. 4/값 5,000원
-

-
- 97-06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박대근·이창용/1997. 5/값 4,000원
- 97-07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전주성/1997. 4/값 4,000원
- 97-08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전영준/1997. 4/값 4,000원
- 97-09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1997. 5/값 5,000원
- 97-10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분석과 석유류 과세정책의 개선방향
성명재/1997. 7/값 7,000원
- 97-11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손원익/1997. 10/값 5,000원
- 97-12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손광락/1997. 8/값 4,000원
- 97-13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안
장근호·김진수/1997. 11/값 9,000원
- 97-14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성명재/1997. 11/값 5,000원
- 97-15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노영훈/1997. 12/값 6,000원
- 97-1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전영준·한도숙/1997. 12/값 7,000원
- 97-17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장근호/1997. 12/값 7,000원
- 98-01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 추계(1954~1996)
표학길/1998. 6/값 7,000원
- 98-02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성명재·전영준/1998. 5/값 6,000원
-

- 98-03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상·이준규/1998. 12/값 4,000원
 - 98-04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국중호/1998. 12/값 4,000원
 - 98-05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소비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안석환 외/1998. 12/값 4,000원
 - 98-06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손원익 외/1998. 12/값 9,000원
 - 98-07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장근호/1998. 12/값 14,000원
 - 98-08 인적자본과 조세
이철인/1998. 12/값 6,000원
 - 98-09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이용섭/1999. 5/값 7,000원
 - 99-01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성명재·장근호/1999. 12/값 12,000원
 - 99-02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
장근호·이명현/1999. 12/값 10,000원
 - 99-03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성명재·전영준/1999. 12/값 10,000원
 - 99-04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산업별 거시경제모형: KIPF99Q
박종규/1999. 12/값 8,000원
 - 99-05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박종규/1999. 12/값 4,000원
 - 00-01 혼합분포 추정을 통한 중심(core) 인플레이션을 측정
박종규/2000. 3/값 5,000원
 - 00-02 외환위기 발생 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 부담의 변화 분석
성명재/2000. 11/값 9,000원
-

-
- 00-03 세수추계의 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전환효과
박기백·이명현/2000. 12/값 6,500원
- 00-04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전영준·한도숙/2000. 12/값 8,000원
- 00-05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이철인·전영준/2000. 12/값 9,000원
- 00-06 저축률 하락과 재정정책
박종규·김진영/2000. 12/값 5,000원
- 00-07 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김정훈/2000. 12/값 5,000원
- 00-08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한도숙/2000. 12/값 5,500원
- 00-09 의료비 지출의 장기예측
김종면/2000. 12/값 8,500원
- 00-10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
을 위한 모형 개발
이명현·정재호/2000. 12/값 5,000원
- 00-11 장기 거시 - 재정 모형(KIPF00A): 공적자금의 재정 수지에 대한 장기
적 영향
박종규/2000. 12/값 5,000원
- 00-12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2001~2005)
박종규·박기백·성명재·전영준/2000. 12/값 5,500원
- 01-01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성명재/2001. 11/값 8,000원
- 01-02 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 방안
이철인/2001. 11/값 10,000원
- 01-03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현진권·박창균/2001. 12/값 7,000원
-

- 01-04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박기백/2001. 12/값 7,000원
 - 01-05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김진영/2001. 12/값 7,000원
 - 01-06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이명헌·성명재/2001. 12/값 6,000원
 - 01-07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전영준·김종면/2001. 12/값 6,000원
 - 01-08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합의
김진영·박창균/2001. 12/값 6,000원
 - 01-09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정훈/2001. 12/값 6,000원
 - 02-01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기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성명재/2002. 6 23/값 7,000원
 - 02-02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전병목/2002. 12. 31/값 7,000원
 - 02-03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모형: KEFM02
박형수/2002. 12. 13/값 6,000원
 - 02-04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박기백·박형수/2002. 12. 31/값 7,000원
 - 02-05 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분석
김종면/2002. 12. 31/값 5,000원
 - 02-06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
율 인상효과분석
이명헌·성명재/2002. 12. 30/값 6,000원
 - 02-07 지속가능발전과 최적 환경세에 대한 연구
권오성/2002. 12. 30/값 6,000원
-

-
- 03-01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
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성명재·박기백·김현아/2003. 8. 31/값 8,000원
- 03-02 장기인력수급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김종면·성명재/2003. 12. 31/값 9,000원
- 03-03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전병목·원종학/2003. 12. 31/값 7,000원
- 03-04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성명재·박노옥/2003. 12. 31/값 11,000원
- 03-05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안
김진수·박형수·안중석/2003. 12. 31/값 7,000원
- 03-06 국제조세회피: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안중석·최준욱/2003. 12. 31/값 6,000원
- 03-07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오성·강만옥/2003. 12. 31/값 9,000원
- 03-08 인구구조의 변화와 조세·재정정책: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최준욱·전병목/2003. 12. 31/값 8,000원
- 03-09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김정훈/2003. 12. 31/값 6,000원
- 03-10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노영훈/2003. 12. 31/값 7,000원
- 04-01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박기백·김진·전병목/2004. 12/값 6,000원
- 04-02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김종면·성명재/2004. 12/값 9,000원
- 04-03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성명재·김종면/2004. 12/값 9,000원
-

-
- 04-04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숙·원종학/2004. 12/값 9,000원
 - 04-05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안중석/2004. 12/값 7,000원
 - 04-06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김현아·박상원·김형준/2004. 12/값 7,000원
 - 04-07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박노욱/2004. 12/값 6,000원
 - 04-08 법인세 부담 연구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박기백·김 진/2004. 12/값 6,000원
 - 04-09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I): 고령화 대응 조세·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노영훈/2004. 12/값 7,000원
 - 04-10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김형준·현진권/2004. 12/값 6,000원
 - 04-11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노영훈/2004. 12/값 6,000원
 - 05-01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
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성명재/2005. 11/값 15,000원
 - 05-0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실증분석 -
김종면·성명재/2005. 12/값 7,000원
 - 05-03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
원종학·김종면·김형준/2005. 12/값 8,000원
 - 05-04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
박상원·김 진/2005. 12/값 6,000원
 - 05-05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병목·장용성/2005. 12/값 6,000원
-

-
- 05-06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노영훈·김현숙/2005. 12/값 8,000원
- 05-0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안종석/2005. 12/값 7,000원
- 05-08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우철/2005. 12/값 7,000원
- 05-09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최준욱·류덕현·박형수/2005. 12/값 12,000원
- 05-10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김정훈/2005. 12/값 6,000원
- 06-01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
박기백·성명재·김종면·김 진/2006. 12
- 06-02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성명재·김현숙/2006. 12
- 06-03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 12
- 06-04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이준규/2006. 12
- 06-05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연구
노영훈/2006. 12
- 06-06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성명재/2006. 12
- 06-07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2006. 12
- 06-08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정재호·박순찬/2006. 12
-

- 06-09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안중석·박노욱·정재호·김진영/2006. 12
- 06-10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김우철·민희철·박상원/2006. 12
- 06-11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중석·홍범교/2006. 12
- 06-12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박형수·류덕현/2006. 12
- 06-13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수·류덕현/2006. 12
- 06-14 재정의 유지 가능성과 세입·세출의 인과관계 검증
박기백·김우철/2006. 12
- 06-15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김진·원종학/2006. 12
- 06-16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김승래/2006. 12
- 06-1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김원석·한상국·박훈/2006. 12
- 06-18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정훈·김현아/2006. 12
- 06-19 평생세부담 분석을 통한 조세의 재분배 기능 고찰
최준욱·김우철·박명호/2006. 12

영문연구보고서

- 96-01 Land Taxation in Korea
Ro Young Hoon/1996. 12
-

정책보고서

- 93-01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최장봉/1993. 9/값 4,300원
- 93-0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유시권·임주영/1993. 10/값 4,900원
- 93-03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곽태원/1993. 10/값 5,300원
- 93-04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손광락 외/1993. 11/값 8,500원
- 94-01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이기영/1994. 1/값 5,500원
- 94-02 적정 통화지표의 선정
이인표/1994. 4/값 4,900원
- 94-03 금융자율화와 신금융상품의 개발
홍범교/1994. 4/값 5,000원
- 94-04 재산보유세의 귀착: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재고찰
김명숙/1994. 5/값 5,500원
- 94-05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개편방
최흥식/1994. 7/값 4,600원
- 94-06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박정수/1994. 8/값 6,100원
- 94-07 취득과세형 상속세 전환에 관한 연구
한상국/1994. 10/값 5,700원
- 94-08 스칸디나비아 3국의 조세제도 - 스웨덴을 중심으로
박노호/1994. 11/값 11,000원
- 94-09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
조윤제·안종석/1994. 12/값 5,500원

- 95-01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조운제·황현리/1995. 3/값 3,000원
 - 95-02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개선방향
이기영/1995. 5/값 2,500원
 - 95-0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김유찬/1995. 6/값 3,000원
 - 95-04 재정정책의 경기조정 기능
박종구/1995. 7/값 3,000원
 - 95-0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손원익/1995. 7/값 3,000원
 - 95-06 석유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성명재/1995. 9/값 3,000원
 - 95-07 사용료소득 과세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김유찬/1995. 12/값 4,000원
 - 96-01 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 분석
최장봉·안종길·김기홍/1996. 4/값 12,000원
 - 96-0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방안
정영현·박정수/1996. 6/값 4,000원
 - 96-03 WTO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임주영/1996. 6/값 3,000원
 - 96-04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박상태/1996. 8/값 11,000원
 - 96-05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최흥식·김성룡/1996. 8/값 7,000원
 - 96-06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6. 8/값 4,000원
 - 96-07 업종전문화시책의 현황, 평가 및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
이기영/1996. 9/값 3,500원
-

-
- 96-08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1996. 11/값 5,500원
- 96-09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현진권/1996. 12/값 6,000원
- 96-10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김진수/1996. 12/값 4,500원
- 96-11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규제완화
김종만/1996. 12/값 4,000원
- 96-1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한도숙/1996. 12/값 6,000원
- 96-13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6. 12/값 4,000원
- 97-01 장외과생금융상품 거래현황과 정책과제
홍범교/1997. 4/값 4,000원
- 97-02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1997. 4/값 5,000원
- 97-03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박상태/1997. 5/값 8,000원
- 97-04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안중석/1997. 6/값 4,000원
- 97-05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에 관한 연구
이기영/1997. 6/값 4,000원
- 97-06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임주영/1997. 12/값 4,000원
- 97-07 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1997. 7/값 5,000원
- 97-08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한상국/1997. 7/값 4,000원
-

- 97-09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유시권·이노창·유재권·오엽록/1997. 8/값 4,000원
 - 97-10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유시권/1997. 10/값 5,000원
 - 97-1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임주영·장근호·노영훈/1997. 9/값 5,000원
 - 97-12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 우리의 대응
홍범교/1997. 11/값 4,000원
 - 97-13 對中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소고
한상국/1997. 12/값 4,000원
 - 97-14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안중석/1997. 12/값 4,000원
 - 97-15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7. 12/값 4,000원
 - 97-16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김진수 외/1997. 12/값 4,000원
 - 97-17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손원익/1997. 12/값 4,000원
 - 98-01 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연구
국중호/1998. 3/값 5,000원
 - 98-02 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문춘걸/1998. 3/값 5,000원
 - 98-03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홍용식/1998. 7/값 6,000원
 - 98-04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윤건영·최영순/1998. 6/값 4,000원
 - 98-05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박종규/1998. 6/값 6,000원
-

-
- 98-06 물가지수 연계채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이상섭/1998. 7/값 4,000원
- 98-07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성명재/1998. 12/값 6,000원
- 98-08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김유찬·홍범교/1998. 12/값 5,000원
- 98-09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국중호/1998. 12/값 6,000원
- 98-10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김진수/1998. 12/값 5,000원
- 98-11 외국제도와외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김유찬/1998. 12/값 5,000원
- 98-12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김재진·김진수/1998. 12/값 7,000원
- 98-13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전영준/1998. 12/값 4,000원
- 98-14 기업분할과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8. 12/값 4,000원
- 98-15 유가증권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및 과세방안
한상국/1998. 12/값 5,000원
- 98-16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한상국/1998. 12/값 4,000원
- 99-01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박기백·최준욱/1999. 12/값 7,000원
- 99-02 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
이상섭·김진수·한상국/1999. 12/값 6,000원
- 99-03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김진수/1999. 12/값 6,000원
-

-
- 99-04 특별소비세 부담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성명재/1999. 12/값 9,000원
 - 99-05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성명재/1999. 12/값 5,000원
 - 99-06 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영준·이철인/1999. 12/값 4,000원
 - 99-07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김정훈/1999. 12/값 6,000원
 - 99-08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노영훈·연태훈·홍범교/1999. 12/값 4,000원
 - 99-09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노영훈·장근호/1999. 12/값 13,000원
 - 00-01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손원익/2000. 12/값 6,000원
 - 00-02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김정훈/2000. 12/값 6,000원
 - 00-03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도숙/2000. 12/값 6,000원
 - 00-04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현진권·정재호/2000. 12/값 5,000원
 - 00-05 파트너쉽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김재진/2000. 12/값 6,500원
 - 01-01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홍범교·안중석/2001. 12/값 7,000원
 - 01-02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황국재/2001. 12/값 10,000원
 - 01-03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정재호/2001. 12/값 8,000원
-

-
- 01-04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안중석/2001. 12/값 6,000원
- 01-05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I)
최준욱·전택승·이명현·한상국/2001. 12/값 19,000원
- 01-06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전영준/2001. 12/값 6,000원
- 01-07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최준욱/2001. 12/값 7,000원
- 02-0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수·이준규/2002. 9. 31/값 8,000원
- 02-02 재정의 지방분권화: 남미국가들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와 시사점
안중석/2002. 12. 18/ 값 9,000원
- 02-03 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II)
최준욱·이명현·전택승/2002. 12. 18/값 9,000원
- 02-04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향 - 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
최명근/2002. 12. 31/값 10,000원
- 02-05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준규·김진수/2002. 12. 31/값 6,000원
- 02-06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이명현/2002. 12. 31/값 8,000원
- 02-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 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김재진·권오성/2002. 10. 30/값 11,000원
- 02-08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김진수·김재진/2002.12. 31/값 14,000원
- 02-09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손원익/2002. 12. 31/값 5,000원
-

- 02-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김정훈/2002. 12. 31
- 02-11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 경제개방이 자본소득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
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정책 논의
최준욱/2002. 12. 31/값 6,000원
- 02-12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노영훈/2002. 12. 31/값 6,000원
- 03-01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한상국/2003. 12. 31/값 11,000원
- 03-02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홍범교/2003. 12. 31/값 7,000원
- 03-03 관세율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와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 12. 31/값 11,000원
- 03-04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박형수·박기백/2003. 12. 31/값 8,000원
- 03-05 조세감면의 합리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박기백·정재호/2003. 12. 31/값 8,000원
- 03-06 지방소비·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김현아/2003. 12. 31/값 8,000원
- 03-07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노영훈/2003. 12. 31/값 6,000원
- 03-08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김재진/2003. 12. 31/값 12,000원
- 03-09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전택승/2003. 12. 31/값 7,000원
- 03-10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손원익/2003. 12. 31
- 04-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정비
홍범교/2004. 12/값 7,000원
-

-
- 04-02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II)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박형수·최준욱·김 진/2004. 12/값 8,000원
- 04-03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정재호·류덕현/2004. 12/값 7,000원
- 04-04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권오성·하현구/2004. 12/값 8,000원
- 04-05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
김 진 수/2004. 12/값 8,000원
- 04-06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손원익·정재호·김형준·김상현/2004. 12/값 18,000원
- 05-01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홍범교/2005. 12/값 6,000원
- 05-02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 영국 및 미국 기업집단세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준규·김진수/2005. 12/값 7,000원
- 05-03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노영훈/2005. 12/값 5,000원
- 05-04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국·박 훈/2005. 12/값 7,000원
- 05-05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안중석·권오성/2005. 12/값 7,000원
- 05-06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정재호·이명현/2005. 12/값 8,000원
- 05-07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노욱/2005. 12/값 6,000원
-

- 05-08 적정세무조사에 대한 연구
김형준/2005. 12/값 6,000원
- 05-09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의 방향(I)
- 재정부문 -
박기백·최준욱·박형수·류덕현/2005. 12/값 8,000원
- 05-10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의 방향(I)
- 조세부문 -
손원익·전병목·박기백·최준욱·박형수·김형준·박명호/2005. 12/
값 10,000원

연구논문집

- 93-01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최 광 외/1993. 12/값 9,000원
- 94-01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조운제 외/1994. 11/값 7,000원
- 95-01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제1권 조세정책 : 이우택 외/1995. 12/값 7,000원
제2권 금융정책 : 조운제 외/1995. 12/값 6,000원
- 96-01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편)/1996. 4/값 11,000원
- 97-01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정영현 외/1997. 12/값 5,000원
- 98-01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현진권 편/1998. 12/값 8,000원
- 98-02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용방향
/1998. 12/값 5,000원
- 99-01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
/1999. 12/값 4,000원

- 99-02 조세개혁의 효율성 제고
현진권 편/1999. 12/값 7,000원

정책연구

- 98-01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김종만/1998. 3/값 3,000원
- 98-02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김유찬/1998. 12/값 3,000원

재정연구

- 『재정금융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1호)/1994. 12/값 8,000원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에 관한 분석/안종범·정영현
 - 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성욱
 -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세제조화의 이론적 타당성/한도숙
 - 시장가격자료를 사용한 운수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추정/현진권
 - 정부계층간 기능분배의 적정구조 분석/박정수
 - 우리나라 실질 설비투자의 장기추세 추정/박종규
 - 수출가격변동과 환율운용 지표/김종만
-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통권 제2호)/1995. 6/값 7,000원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김유찬
 -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추정 및 예상효과 분석/노영훈
 - 지방교부세 분배방식에 관한 연구/안종석
 - 수출금융의 可用量과 금리보조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이기영
 -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김종만

- 證據金の 시장안정화 기능과 적정수준/최홍식
- 우리나라의 통화충격지표/이인표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3호)/1995. 12/값 6,500원

- 遺産行動이 減稅정책의 실물효과에 미치는 영향/배준호
- 均等犧牲假說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임주영
- 지방세 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미국 州稅를 중심으로/장근호
- 자동차 관련 세법개정의 효과: 소득 계층별 세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전영준
- 거시금융모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의 파급효과 분석/최장봉
- 先物시장에서의 조작과 감독: 문헌조사를 중심으로/홍범교
- 서평: 「Regulation and Economic Analysis: A Critique over Two Centuries」(by Richard L. Gordon, 1994)/이준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통권 제4호)/1996. 6/값 6,500원

-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성명재
-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 한국의 경우/박완규
- 개인연금의 과세유형이 국민저축과 정부채무에 미치는 효과/배준호
- 재고자산에 대한 세제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 미국의 경우/손원익
- 조세정책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안종석
-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논의와 전망/김종만
- 서평: 「The Economic Foundations of Government」(by Randall G. Holcombe, 1994)/소병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5호)/1996. 12/값 7,000원

- 개방경제하에서 조세정책이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분석/안종석
-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양준모
- 加重平均值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옥동석

-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간신용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이기영
- 석유류 과세의 소득계층별 귀착 분석/최준욱
-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개편방향 검토/한상국, 배준호
- 書評: 「Public Economics: Selected Papers by William Vickery」(ed. by Richard Arnott and others, 1994)/노영훈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6호)/1997. 8/값 9,000원

- 기업 기부행위의 동기에 관한 연구/김진수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박정수
- 메뉴비용과 가격충격분포/박종규
- 메뉴비용과 산업별 요소가격충격하에서의 독점적 경쟁기업의 가격결정/박종규
- 환율변동이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非對稱性/김종만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분석/진병용
- 인플레이션과 상대가격변동성/황의각, 현성민
- 서평: 「중앙은행론」(정운찬 著, 1995)/정진호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7호)/1997. 12/값 7,000원

-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을 위한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분포의 추정/성명재
- 교육서비스와 소득분포 평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국중호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행태분석: 기간간 최적모형을 중심으로/김규한, 이명훈
- 우리나라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결정요인 분석/김종만
- 주가변동성의 추정과 활용/이준행, 최홍식

※ 제5권 제1호부터 『재정금융연구』를 『재정연구』로 改題

『재정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8호)/1998. 8/값 7,000원

- 공·사교육비와 조세/박기백
- 조세정책 평가모형에서 유산이 주는 경제학적 함의/김재진
- 인적투자와 물적 이전에서 나타나는 과세효과/국중호
- 경제체제 전환기의 신용계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인정책/한도숙
- 서평: Do Deficits Matter?(by Daniel Shaviro, 1997)/이지순

『재정연구』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1998. 12/값 7,000원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안중석
- 자본비용의 추정: 상장기업을 대상으로/윤종인
- 통화정책의 주가에 대한 효과분석/이상섭
-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축적과정에서의 유산의 역할 및 행태분석/배준호,
김진수
- 공공재의 수요와 불확실성/이철인

『재정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1999. 8/값 6,000원

-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비용의 세대별 귀착/전영준
- 수직적 상품차별화된 산업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분석/연태훈
-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 지속 가능 시한의 변화: 단순 시뮬레이션 분석/
박종규
- 다국적기업들의 기업 내 자금흐름에 대한 이론적 분석/한도숙
- The Effects of Off-farm Work Experience and the Regional Labor
Market Situation on Farmer's Exit and Off-farm Work Participation/
이명현

『재정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1호)/2000. 1/값 7,000원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감면 규모 추정/박기백

- 인구집적과 도시의 성장: 정태모형과 그 실증적 함의/김진영
-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마재신
- 同次性, 실질잔고효과와 고전파적 이분법/장세진
- The Long-run Burden of Health Care Costs on Public Finance: An Alternative Forecasting Approach/김종면

『재정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2000. 7/값 7,000원

-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최적관세: 小國과 大國의 경우/정재호
- 고정투자자에 대한 채무제약가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윤종인
- 지방재정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안종석
-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 거시적 구조 변화와 미시적 원인/박종규, 김진영
- 서평: Cybertaxation: The Taxation of E-Commerce/홍범교

『재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3호)/2001. 4/값 7,000원

-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
에 관한 연구/성명재
-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
/정재호
- 통화옵션에 나타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추정/박창균
-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licy Analysis for the Social Optimum/권오성
- 서평: 20세기 빈부격차를 설명하는 비경제학자들의 견해/김진영

『재정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2001. 12/값 5,000원

- ACE제도의 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과/곽태원
- 로비활동하의 간접세 결정에 관한 연구/이인호

- 지방세수추계 모형 및 요인분석/김현아
- Neighborhood Structure and the Viability of Cooperation/전택승, Rajiv Sethi

『재정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5호)/2002. 7/값 5,000원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김상헌·현진권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체계의 구축/국중호
-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김정유
-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권오성
- 영문요약

『재정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2002. 12/값 5,000원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김상헌·현진권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체계의 구축/국중호
-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김정유
-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권오성
- 영문요약

『재정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2003. 7/값 5,000원

- 1990년대 전·후반기의 소득세 부담률 변화의 요인별 효과 분리추정에 관한 연구/성명재
- 형평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현진권, 임병인
-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김정완

- Interest Group, Government Structure and Public Expenditure/김상헌

『재정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8)/2003. 12/값 5,000원

- 직접세와 간접세 인하의 지역경제 성장효과 비교: CGE모형의 정태 동태 분석/지해명
-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모형의 분석/유승훈
- 國際的 租稅 非中立性 測定에 관한 研究 - 우리나라와 G7 國家의 個人 포트폴리오 投資를 중심으로/이경근

『재정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19)/2004. 8/값 5,000원

- 한계세율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노현섭·서갑수·서종길
- 레버리지가 기업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System-GMM을 이용한 상장제 조기업 패널 분석/조삼용·신선우·이훈현
- 무선데이터 통신 과금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김정유
-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Nonparametric Structural Models by Instrumental Variables Method/김우철

재정포럼

『재정포럼』 1996. 7월호부터 계속

기타보고서

- 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
안중범(편)/1993. 10/값 4,000원
- 새로운 경제질서와 생산성 향상
장현준/1994. 10/값 6,000원

- 개정세법 총람(Ⅰ)(Ⅱ)(Ⅲ)
/1994. 10/값 100,000원
 - 재정·금융정책과 자유주의 사상
이근식/1994. 12/값 8,500원
 -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한상국/1995. 6/값 6,000원
 - 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한상국/1995. 12/값 6,000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이인표·안중범·최흥식/1995. 12/값 6,5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임주영 외/1996. 11/값 5,500원
 -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이철승/1996. 12/값 6,000원
 -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이준규·이태희/1997. 3/값 4,000원
 -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함의
정영현·심재진(역)/1997. 4/값 4,000원
 - 세무자문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건창/1997. 6/값 6,000원
 - 우리나라와 BIS, 미국 및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최장봉·가경수/1997. 6/값 5,000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김종만·김관영/1997. 9/값 7,000원
 -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 범위
옥동석/1997. 10/값 5,000원
 - 캐나다의 재정
박기백/1997. 10/값 6,000원
-

-
- 독일의 재정
김유찬/1997. 11/값 6,000원
 - 영국의 재정
최준욱/1997. 11/값 6,000원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현진권 편/1997. 11/값 13,000원
 - 조세정책50년 제1권~제6권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제2권: 총괄자료집, 제3권: 소득세자료집, 제4권: 법인세자료집, 제5권: 소비과세자료집, 제6권: 재산과세자료집〉
최광·현진권 편/1997. 12/전 6권 1질(CD 포함) 25만원, 각권 4만원
 -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Globalization, Unification and Tax Policy)
김유찬 외/1997. 12/값 8,000원
 -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김유찬 외/1998. 2/값 11,000원
 -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우택/1998. 3/값 9,000
 -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 외/1998. 3/값 5,000원
 - 일정한 조선의 조세정책
차병권/1998. 3/값 9,000원
 -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대도시경제의 내발적 발전과 자치단체 재정개혁 전략
황한식 외/1998. 7/값 6,000원
 - 미국과 캐나다의 세수추계
성명재/1998. 11/값 6,000원
 - 지방재정 구조분석 - 전남·전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광수·김일태/1998. 12/값 4,000원
 - 주류 유통·판매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성명재/1999. 12/값 4,000원
-

-
-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파급효과
노영훈·심재진 역/1999. 12/값 4,000원
 - 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손원익/1999. 12/값 5,000원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현진권(편)/2000. 4/값 13,000원
 - OECD 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2002. 1/값 8,000원
 -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최광/2002. 1/값 8,000원
 -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최명근/2002. 3/값 4,000원
 -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과 정책시사점
국중호·한상국/2002. 10/값 5,000원
 - 한일 지방세 구조와 세부담 특성비교
국중호/2002. 12/값 6,000원
 - 조세사면 - 한국에서의 정책적 유용성 -
최병철/2002. 12/값 4,000원
 - 학교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교육 행·재정체제의 개혁
- 탈통제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 -
이진순/2002. 12/값 6,000원
 -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원윤희·전택승·황수철·안중범·임주영/2002. 12/값 15,000원
 - 인적자원의 장기추이 분석과 복지재정 잠재부담 전망
김진영·안주엽·김종면·전영준
 -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이일영·김연철·양문수·이건범·이남주·전병유/2003. 5/값 7,000원
 -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옥동석/2003. 8/값 9,000원
-

-
-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이준규/2003. 9/값 10,000원
 - Tax Equity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정광수/2003. 11
 - 전설의 10년: 1990년대 미국경제 성공의 교훈
김교식/2003. 11
 -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전승훈/2003. 12/값 7,000원
 -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배준호/2003. 12/값 7,000원
 -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김상헌·이영·김진영·민동기·사공 용/2003. 12/값 12,000원
 - 고령화 현상에 수반되는 사회경제 변수 및 의료지출의 변화
김종면·이철희·전영준/2003. 12/값 8,000원
 -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이형구·전승훈(편)/2003. 12/값 150,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장근호/2004. 6/값 20,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박정수/2004. 6/값 15,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국중호/2004. 6/값 15,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안창남/2004. 6/값 13,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김유찬/2004. 6/값 13,000원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택승/2004. 8/값 10,000원
-

-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대한 이해
전승훈 외/2004. 9/값 13,000원
-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외/2004. 12/값 9,000원
-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 외/2004. 12/값 23,000원
- 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 국내외의 연구성과 개관
곽태원/2005. 8/값 6,000원
- 부동산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이진순/2004. 8/값 5,000원
-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나성린/2005. 12/값 4,000원
- 탈세와 세무행정
유일호/2005. 12/값 5,000원
-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김완석/2005. 12/값 9,000원
- 한·일 이전가격 과세실무 비교
정영한/2005. 12
-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나성린·박기백·박형수/2006. 12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2006. 12

세법연구

- 06-01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안중석·조찬래/2006. 8

-
- 06-02 주요국의 가산세제도-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상국·구자은·황진영/2006. 8
- 06-03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박명호·정희선/2006. 8
- 06-04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안중석·구자은/2006. 8
- 06-05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안경봉·정희선/2006. 11
- 06-06 주요국의 보유과세체계 현황 및 비교
박명호·한상국·송은주/2006. 11
- 06-07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전병목·이승식/2006. 11
- 06-08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전병목·조찬래/2006. 11
- 07-01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채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한상국·안경봉·마정화/2007. 11
- 07-0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전병목·김태훈·문예영/2007. 11
- 07-0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박명호·문예영/2007. 11
- 07-04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김진수·송은주·마정화/2007. 11
- 07-05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손원익·김정아·송은주/2007. 11
- 07-06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연구
전병목·정희선/2007. 11
- 07-07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전병목·정희선·조진권·기은선·박임수/2007. 11
-

07-08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성명재 · 박임수/2007. 11

07-09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정재호 · 김태훈/2007. 11

한국조세연구원 도서회원 가입안내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1년간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간행물(비판매용 도서 포함. 단 일부 용역보고서 등은 제외)을 우송합니다.
- 2) 기발행된 간행물 구입시 4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3) 회원에게는 본원 도서관의 소장도서 및 통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4) 본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우선 초청대상이 됩니다.
- 5) 가입기간중에 회비가 오르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2. 가입방법

- ◆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연구원 연구출판팀으로 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고(Fax 또는 전화신청도 가능)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 회원의 자격기한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 ※ 2~3년간 장기가입도 가능합니다.

3. 연간회비

- ◆ KIPF 도서회원 가입비 : 10만원
- ◆ 『재정포럼』 구독료 : 3만원
- ◆ 도서회원 가입 및 『재정포럼』 구독 : 12만원

4. 회비납부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계좌번호 : 441-05-000011)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문의처 : 우편번호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도서회원 담당자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연구결과 요약집

2007년 12월 11일 인쇄

2007년 12월 14일 발행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代) FAX: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68-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